

#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정 2022년 1월 11일 의회규칙 제23호  
전부개정 2023년 12월 12일 의회규칙 제32호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오산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오산시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원 1인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총원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
2. 법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의 지급
3.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

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4. 영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 기간의 연장
5.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6. 영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7. 영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8.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 승진 임용

**제4조(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전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2장 시험

**제5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응시원서 1부를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오산시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 및 인터넷 업무처리에 드는 부가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

3. 8급·9급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5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영 제64조제2항의 각 호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제7조(응시결격사유)**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영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제9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5조제5항 및 제17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에 따른 응시나이를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나이를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

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 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1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때,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 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 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사제지간 등) 및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시험수당 등 지급)** ①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제13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면접시험은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판단한다.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회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④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제14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12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1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 과목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제15조(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9의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으로서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13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 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 직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13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 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력경쟁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또는 별표 14에서 규정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 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14의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과 같다.

| 출 신 학 력 별     | 임 용 예 정 직 급 |
|---------------|-------------|
| 대 학 졸 업 자     | 6급·7급·연구사   |
| 전 문 대 학 졸 업 자 | 7급·8급·지도사   |
| 고 등 학 교 졸 업 자 | 9급          |

-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연구관·지도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5 및 별표 16에 따른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 직급은 제4항제3호에 따른다.
- ⑦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 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을 말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한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 ⑧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7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8과 같다.
- ⑨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16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①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내부위원: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2. 외부위원: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제17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제18조(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직무분야: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

2. 특수환경: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자 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별표10의 규정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제19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18조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력 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그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연구직공무원: 별표 2 또는 별표 9

2. 지도직공무원: 별표 3 또는 별표 9

②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10과 같다.

③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9에 따른다.

④ 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7과 같다.

## 제3장 임용

**제21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에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2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

##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지 제3호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시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병역을 필한 사람

**제23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 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 결 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제25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8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는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

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9의 기준에 따라 당해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

**제26조(특별승진 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와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27조(가산점 부여 기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각 호의 부여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점을 줄 수 있다.

1. 자격증 가산점: 별표 20에 규정된 기준
2. 근무경력 가산점: 별표 21에 규정된 기준
3. 실적 가산점: 별표 22에 규정된 기준

**제28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의 경우 평정규칙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개의 내용은 평정자의 평정등급, 평정점수 및 종합평정 의견에 한정한다.

**제29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2항과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6조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23과 같다.

**제30조(격무·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기피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제31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부칙** <2023. 12. 12 의회규칙 제32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조, 제8조, 별표 4(전산 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별표 6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전산 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2024년 1월 1일
2. 별표12 개정규정(녹지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2025년 1월 1일
3. 제27조의 개정규정: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 <b>별표 및 별지 목록</b>   |
|---|
| [별표1] 각종 시험시의 구비서류  |
| [별표2]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                            |
| [별표3]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                            |
| [별표4]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                           |
| [별표5]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            |
| [별표6]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
| [별표7]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
| [별표8]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
| [별표9]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과 전직을 위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 |
| [별표10]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                                     |
| [별표11] 분야별 자격증 가산 비율표   |
| [별표12]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
| [별표13]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                                      |
| [별표14]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                                       |
| [별표15]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                                    |
| [별표16] 연구관 및 지도관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                          |
| [별표17] 연구직·지도직공무원의 기술직렬 전직시 전직시험면제 기준 및 직무내용이 유사한 기술직렬 기준표    |
| [별표18]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기준표                      |
| [별표19] 공무원경력에 상당계급 기준표  |
| [별표20] 일반직 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구분표                                  |
| [별표21]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기준  |
| [별표22] 실적가산점 부여기준   |
| [별표23] 겸임 예정직급 기준표  |
| [별지1] 응시원서  |
| [별지2] 임용후보자등록원서   |
| [별지3] 임용후보자명부   |
| [별지4]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   |
| [별지5] 공개경쟁임용시험 면접시험 평정표                                       |
| [별지6] 경력경쟁임용시험등 면접시험 평정표                                      |
| [별지7] 시험요구서   |
| [별지8] 공무원 5급 승진임용순위명부   |

[별표 1]

**각종 시험시의 구비서류**

(제5조제2항 관련)

| 구분 | 구비서류의 종류                    | 비 고   |
|----|-----------------------------|---|
| 1  | 주민등록표 초본 1통<br>(전체 이력기재)    | 시·구, 읍·면·동장 발행  |
| 2  | 복무확인서 1부                    | 현역군인에 한함  |
| 3  |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
| 4  |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또는<br>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에<br>규정된 취업보호대상자에 한함 |
| 5  | 수급자증명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규정된<br>수급자로서, 저소득층구분모집 응시대<br>상자에 한함               |
| 6  | 장애인 복지카드,<br>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br>제3조, 제4조에 규정된 장애인으로서<br>장애인구분모집 응시대상자에 한함  |
| 7  | 학교생활기록관계서류                  |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br>하는 경우에 한함                                  |

비고: 위 표의 구비서류 중 주민등록표 초본,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등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당사자로부터 제출받는 것을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고 첨부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각 1부를 제출받아 첨부해야 한다.

[별표 2]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

(제13조제3항, 제15조제4항 및 제5항, 제20조제1항 관련)

| 직렬   | 계급   |   | 연 구 관 · 연 구 사   |
|------|------|---|---|
|      | 직류   |   |   |
| 학예연구 | 학예일반 |   | 국어국문학, 고고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 문화유적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문헌정보학, 서지학,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건축학(건축사를 포함한다.), 연극학, 공연예술학, 무용학, 생물학, 지질학, 음악, 지리학, 조경학, 가정학(의생활·식생활·주생활분야 등 생활과학 분야를 포함한다)을 전공한 사람 |
|      | 미    | 술 |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미술관학, 예술학 또는 미학을 전공한 사람   |
|      | 국    | 악 | 국악 또는 한국무용을 전공한 사람  |
|      | 국    | 어 | 국어국문학, 국어정책학 또는 언어학을 전공한 사람   |
| 편사연구 | 편    | 사 | 역사학을 전공한 사람   |
| 기록연구 | 기록관리 |   | 기록관리학, 역사학,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
| 공업연구 | 기    | 계 | 정밀기계공학, 기계공학, 기계설계학, 제어계측공학, 항공우주공학 또는 조선공학을 전공한 사람   |
|      | 전    | 기 | 전기공학, 전자공학, 통신공학 또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사람   |
|      | 전    | 자 |   |
|      | 금    | 속 | 금속공학 또는 금속재료공학을 전공한 사람  |
|      | 섬    | 유 | 섬유공학을 전공한 사람  |
|      | 화    | 공 |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농화학, 재료공학, 고분자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생물학, 생물공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단백질공학, 생물정보학 또는 환경공학을 전공한 사람  |
|      | 화    | 학 |   |
|      | 산    | 업 | 산업경영학, 산업공학, 공업경영학 또는 산업통계학을 전공한 사람   |
|      | 물    | 리 | 물리학, 응용물리학 또는 원자력공학을 전공한 사람   |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직렬    | 계급   |  | 연구관·연구사  |
|-------|------|--|--|
|       | 직류   |  |  |
| 농업연구  | 작물   |  | 농학, 자원식물학, 농화학, 환경학, 원예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실험통계학, 기상학, 수자원학, 약학, 한약학, 환경공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천연물화학 또는 관계배수학을 전공한 사람 |
|       | 농업환경 |  | 농학, 자원식물학, 식물학, 원예학, 농화학, 환경학, 환경공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생화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수자원학 또는 관계배수학을 전공한 사람  |
|       | 작물보호 |  | 농화학, 농생물학, 환경학, 환경공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미생물학, 작물보호학, 식물병리학, 곤충학, 농학, 원예학 또는 분자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
|       | 농업경영 |  | 농업경영학, 농경제학, 축산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자원경제학 또는 통계학을 전공한 사람   |
|       | 산업곤충 |  | 잠사학, 천연섬유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농공학, 곤충학, 생물학, 천연고분자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화학, 농화학, 유전공학 또는 약학을 전공한 사람   |
|       | 원예   |  | 원예학, 조경학, 농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농생물학 또는 식품가공학을 전공한 사람  |
|       | 생명유전 |  |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미생물학, 식물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화학공학, 농학, 원예학, 농화학, 생물공학, 천연물화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
|       | 농촌생활 |  | 식품학, 식품가공학, 생화학, 피복과학, 조경학, 농촌계획학, 산업공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경제학, 농촌관광학, 산업보건학, 또는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                                       |
|       | 축산   |  | 축산학, 축산경영학, 수의학, 식품가공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생화학, 환경공학 또는 유전공학을 전공한 사람  |
|       | 농공   |  | 농공학, 건축공학, 기계공학, 재료공학, 토목공학, 농업기계공학, 전기공학, 식품가공학, 환경공학 또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사람   |
| 농식품개발 |      |  | 식품학, 식품영양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식품위생학, 식품화학, 식품생물공학, 식품효소공학, 식품미생물학, 생화학, 농화학, 단백질공학, 식품저장학, 천연물화학, 육가공학, 유가공학 또는 조리과학을 전공한 사람                  |
|       | 임업   |  |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화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생물화학공학, 생물공학, 농생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유전공학, 조경학, 생물학, 임업경제학, 임업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원예학 또는 식물자원학을 전공한 사람            |
| 녹지연구  | 조경   |  |  |
|       |      |  |  |
| 수의연구  | 수의   |  | 축산학, 수의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의학, 한의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



| 직렬     | 계급   |    | 연구관·연구사  |
|--------|------|----|--|
|        | 직렬   | 직류 |  |
| 해양수산연구 | 해양환경 |    | 해양학, 해양공학, 환경공학, 해양오염학, 화학, 지구과학, 지구물리학, 지리정보학, 해양원격탐사학, 해양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
|        | 수산자원 |    | 수산자원학, 어장학, 해양생산관리학, 해양생물학, 생물통계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
|        | 수산양식 |    | 수산양식학, 수산자원학, 어병학, 해양오염학, 해양생물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
|        | 수산공학 |    | 해양학, 어구어법학, 어구공학, 어업기기학, 해양생물학, 수산토목학, 해양공학, 조선공학 또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사람  |
|        | 수산가공 |    |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산가공학, 수산화학, 생화학, 생명공학 또는 미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
|        | 수산경제 |    | 수산경제학, 수산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또는 자원경제학을 전공한 사람  |
| 보건연구   | 의학   |    |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수의학, 미생물학, 생리학 또는 생화학을 전공한 사람   |
|        | 약학   |    | 보건학, 약학, 한약학, 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화학을 전공한 사람  |
|        | 공중보건 |    |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
| 환경연구   | 환경   |    |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사람   |
| 시설연구   | 토목   |    | 토목공학, 건설도시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또는 산업공학을 전공한 사람   |
|        | 건축   |    | 건축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산업공학 또는 조경공학을 전공한 사람   |
| 방재안전연구 | 안전관리 |    | 안전공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 경제학, 경영학, 보험학, 통계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항해학, 경찰학, 정책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소방학, 소방방재학, 소방행정학 또는 위기관리학을 전공한 사람                                       |
|        | 재난관리 |    | 방재안전학, 도시방재학, 토목공학, 보건학, 보건환경안전학, 기상학, 도시공학, 지형공간정보학, 건축공학, 환경공학, 자원공학, 지질학, 미생물학, 수의학, 원자력공학, 해양공학, 항공우주공학, 기계공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공학 또는 산업공학을 전공한 사람 |

비 고 : 위 표에서 “전공한 사람”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별표 3]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

(제15조제5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관련)

| 직렬 \ 계급<br>직류 | 계급<br>직류                        | 지 도 관   | 지 도 사   |
|---------------|---------------------------------|---|---|
| 농촌지도          | 전 직 류<br>(농촌생활<br>직류는<br>제외한다.) | 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을 전<br>공한 사람  |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br>학이상 졸업자   |
|               | 농촌생활                            | 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 소비<br>자학, 가족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교육<br>학(가정교육학을 포함한다), 관광학 또는<br>인간공학을 전공한 사람 | 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 소비<br>자학, 가족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교육<br>학(가정교육학을 포함한다), 관광학 또는<br>인간공학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
| 어촌지도          | 어 촌                             | 수산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사람  | 수산 또는 해양계통의 전문대학이상 졸<br>업자  |

- 비 고 : 1. 위 표에서 “전공한 사람”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라 함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관련 계통 대학에 편입한 사람은 당해 관련 계통의 대학을 수료하거나 졸업한 사람이어야 한다.

[별표 4]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

(제17조 관련)

| 직렬   | 계급   |   | 5급이상   | 6·7급   | 8·9급          |
|------|------|---|--|--|---------------|
|      | 직렬   | 직류  |  |  |               |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사회복지사 1급   | 사회복지사 2급   | 사회복지사 3급      |
| 사 서  | 사 서  | 사 서   | 1·2급 정사서   | 1·2급 정사서, 준사서  | 1·2급 정사서, 준사서 |
| 속 기  | 속 기  | 속 기   | 한글속기 1급  | 한글속기 1·2급  | 한글속기 1·2·3급   |
| 수 의  | 수 의  | 수 의   | 수의사  | 수의사  |               |
| 의 무  | 일반의무 | 의사, 한의사   |  |  |               |
|      |      | 치 무   | 치과의사   |  |               |
| 약 무  | 약 무  | 약사, 한의사, 한약사  | 약사, 한의사, 한약사   |  |               |
| 간 호  | 간 호  | 조산사, 간호사  | 조산사, 간호사   | 조산사, 간호사   |               |
| 간호조무 | 간호조무 |   |  | 간호조무사  |               |
| 보건진료 | 보건진료 | 조산사, 간호사  | 조산사, 간호사   | 조산사, 간호사   |               |
| 해양수산 | 일반선박 |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br>기사(일반기계, 조선)<br>항해사1급 내지 2급<br>기관사1급 내지 2급 |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br>기사(일반기계, 조선)<br>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br>항해사1급 내지 4급<br>기관사1급 내지 4급 |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br>기사(일반기계, 조선)<br>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br>항해사1급 내지 6급<br>기관사1급 내지 6급 |               |
|      | 선박항해 | 기술사(조선)<br>기사(조선, 항로표지)<br>항해사1급 내지 2급                            | 기술사(조선)<br>기사(조선, 항로표지)<br>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br>항해사1급 내지 4급                               | 기술사(조선)<br>기사(조선, 항로표지)<br>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br>항해사1급 내지 6급                               |               |
|      | 선박기관 |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br>기사(일반기계)<br>기관사1급 내지 2급                    |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br>기사(일반기계)<br>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br>기관사1급 내지 4급                        |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br>기사(일반기계)<br>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br>기관사1급 내지 6급                        |               |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계급   |      | 5급이상   | 6·7급   | 8·9급   |
|------|------|--|--|--|
| 직렬   | 직류   |  |  |  |
| 항 공  | 일반항공 |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br>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br>산업기사(항공)<br>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br>산업기사(항공)<br>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
|      | 조 종  |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
|      | 정 비  |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br>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br>산업기사(항공)<br>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br>산업기사(항공)<br>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
| 시 설  | 지 적  |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 기술사(지적) 기사(지적)<br>산업기사(지적)   | 기술사(지적) 기사(지적)<br>산업기사(지적)   |
| 의료기술 | 의료기술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
| 위 생  | 위 생  |  | 위생사<br>영양사   | 위생사<br>영양사   |
|      | 사 역  |  | 영양사  | 영양사<br>환경기능사   |
| 조 리  | 조 리  |  | 조리기능장<br>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 조리기능장<br>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br>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
| 운 전  | 운 전  |  |  | 제1종운전면허(대형)<br>제1종운전면허(보통)<br>제2종운전면허(보통)  |

- 비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4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5]

##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

(제15조제1항 관련)

###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지도직 제외)

| 계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 자격증의 구분<br>및 경력 기준 | 기술사 | 기능장,<br>기사(6년),<br>산업기사(9년),<br>대한민국명장 | 기사(3년),<br>산업기사(6년) | 기사,<br>산업기사(3년),<br>기능사(4년),<br>국제기능올림픽<br>대회 입상자<br>(2년) | 산업기사,<br>기능사(2년),<br>국제기능올림픽<br>대회 입상자,<br>전국기능경기대<br>회 입상자<br>(2년) |

비고

1. (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안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능사,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제외한다.
- 1의2.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는 경우에는 5급 경력경쟁임용 해당자격증 소지자로서 담당 업무와 관련있는 분야에서 다음의 기간동안 근무·연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2급 : 10년이상, 3급 : 8년이상, 4급 : 4년이상,
2.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은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3.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의 공인(공인이 폐지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민간자격증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4.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중 법령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격증 소지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5.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법령에 따른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본다.
6.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를 말한다.

[별표 6]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제15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 직 렬 | 직 류   | 대 상 자 격 증   |
|-----|-------|---|
| 전 산 | 전 산   | 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
|     | 데 이 터 |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br><br>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br><br>기 능 사 :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
| 공 업 | 일반기계  |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br><br>기 능 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br><br>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
|     |       | 농업기계  |
|     | 기계운전  | 기 술 사 :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br><br>기 능 장 :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br><br>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br><br>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br><br>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

| 직 렬 | 직 류   | 대 상 자 격 증  |
|-----|-------|--|
|     | 조 선   | 기 술 사 : 조선<br>기 사 : 일반기계, 조선<br>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조선<br>기 능 사 :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   |
|     | 일반전기  | 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br>기 능 장 : 전기<br>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br>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br>기 능 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
|     | 전 자   | 기 술 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br>기 능 장 : 전자기기<br>기 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br>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품질경영<br>기 능 사 :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
|     | 원 자 력 | 기 술 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br>기 사 : 원자력, 에너지관리<br>산업기사 : 에너지관리   |
|     | 금 속   | 기 술 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br>기 능 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br>기 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br>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br>기 능 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
|     | 섬 유   | 기 술 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br>기 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br>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br>기 능 사 : 염색<br><br>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
|     | 일반화공  | 기 술 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br>기 능 장 : 위험물, 가스<br>기 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br>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br>기 능 사 :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
|     | 자 원   | 기 술 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br>기 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br>산업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br>기 능 사 : 시추, 광산보안, 환경, 화약취급  |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직 렬  | 직 류  | 대 상 자 격 증  |
|------|------|--|
| 농 업  | 일반농업 | 기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br>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br>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br>기 능 사 :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
|      | 식물검역 | 기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br>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임업종묘, 유기농업<br>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산림, 유기농업<br>기 능 사 :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
|      | 축 산  | 기술 사 : 축산, 식품<br>기 사 : 축산, 식품<br>산업기사 : 축산, 식품<br>기 능 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
|      | 생명유전 | 기술 사 : 종자, 농화학, 식품<br>기 사 : 종자,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br>산업기사 : 종자, 식품<br>기 능 사 :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
| 녹 지  | 조 경  | 기술 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자연환경관리<br>기 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br>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br>기 능 사 : 산림, 조경   |
|      | 산림자원 | 기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br>기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br>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br>기 능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
|      | 산림보호 | 기술 사 : 종자, 산림, 농화학<br>기 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br>산업기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br>기 능 사 : 산림  |
|      | 산림이용 | 기술 사 : 산림<br>기 사 : 산림, 임산가공<br>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br>기 능 사 : 산림, 임산가공   |
| 해양수산 | 일반해양 | 기술 사 : 해양, 수질관리<br>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br>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br>기 능 사 : 잠수   |
|      | 일반수산 | 기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br>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br>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br>기 능 사 : 수산양식, 식품가공   |



| 직 렬  | 직 류         | 대 상 자 격 증  |
|------|-------------|--|
|      | 어 로         | 기 술 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br>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br>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
|      | 일반선박        | 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br>기 사 : 일반기계, 조선<br>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
|      | 선박항해        | 기 술 사 : 조선<br>기 사 : 조선, 항로표지<br>산업기사 : 조선, 항로표지  |
|      | 선박기관        | 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br>기 사 : 일반기계<br>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
|      | 해양교통<br>시 설 | 기 술 사 :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br>기 능 장 : 전기, 전자기기<br>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br>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br>기 능 사 :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
| 보 건  | 보 건         |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br>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br>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br>기 능 사 : 식품가공  |
| 의료기술 | 의료기술        | 기 술 사 : 방사선관리, 기사 : 의공, 산업기사 : 의공  |
| 식품위생 | 식품위생        | 기 술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br>기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br>산업기사 :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br>기 능 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
| 환 경  | 일반환경        | 기 술 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br>기 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br>산업기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br>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직 렬 | 직 류   | 대 상 자 격 증   |
|-----|-------|---|
|     | 수 질   | 기술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br>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br>산업기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br>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
|     | 대 기   | 기술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br>기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br>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br>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
|     | 폐 기 물 | 기술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br>기사 : 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br>산업기사 :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br>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
| 항 공 | 일반항공  | 기술사 : 항공기관, 항공기체<br>기사 : 항공<br>산업기사 : 항공  |
|     | 정 비   |   |
| 시 설 | 도시계획  |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br>기능장 : 건축일반시공<br>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방재<br>산업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br>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
|     | 일반토목  |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br>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br>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br>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
|     | 수도토목  |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br>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br>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br>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
|     | 농업토목  |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br>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br>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br>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

| 직 렬    | 직 류    | 대 상 자 격 증   |   |
|--------|--------|---|---|
|        | 건축     | 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br>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br>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br>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br>기능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운수운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   |
|        | 지적     | 기술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br>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   |
|        | 측지     | 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br>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   |
|        | 교통시설   |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br>기사 : 건설안전, 교통<br>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
|        | 도시교통설계 | 산업기사 :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br>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br>기능사 :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br>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   |
|        | 디자인    | 기술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br>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br>산업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br>기능사 :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  |   |
|        | 방재안전   |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br>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br>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br>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br>건축설비, 건축, 방재<br>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br>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   |
|        | 방송통신   | 통신사   | 기술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
|        |        | 통신기술  | 기능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  |
|        |        | 전송기술  | 기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br>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
| 전자통신기술 |        | 기능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   |
| 조리     | 조리     | 기능장 : 조리<br>산업기사 :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br>기능사 :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   |
|        |        | 위생  | 사역  |
| 시설관리   | 시설관리   | 기능장 : 전기<br>기사 :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br>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br>기능사 : 전기, 기계정비, 조경  |   |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2. 기타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

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 직렬   | 계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      | 직류   |                                       |                             |                      |                       |                   |
| 행정   | 일반행정 | 변호사,<br>변리사(4)                        | 변리사                         |                      |                       |                   |
|      | 법무행정 |                                       |                             |                      |                       |                   |
|      | 재경   | 변호사<br>공인회계사(4)                       | 공인회계사<br>감정평가사(3)           | 감정평가사                |                       |                   |
|      | 국제통상 | 감정평가사(7)                              |                             |                      |                       |                   |
|      | 노동   | 변호사<br>공인노무사(7)<br>직업상담사1급<br>(10)    | 공인노무사(3)<br>직업상담사1급(6)      | 공인노무사<br>직업상담사1급(3)  | 직업상담사1급<br>직업상담사2급(3) | 직업상담사2급           |
|      | 문화홍보 | 변호사                                   |                             |                      |                       |                   |
|      | 기업행정 | 변호사<br>공인회계사(4)<br>감정평가사(7)<br>세무사(7) | 공인회계사<br>감정평가사(3)<br>세무사(3) | 감정평가사<br>세무사         |                       |                   |
|      | 감사   | 변호사<br>공인회계사(4)<br>세무사(7)<br>감정평가사(7) | 공인회계사<br>세무사(3)<br>감정평가사(3) | 세무사<br>감정평가사         |                       |                   |
| 세무   | 지방세  | 변호사<br>공인회계사(4)<br>세무사(7)             | 공인회계사<br>세무사(3)             | 세무사                  |                       |                   |
| 교육행정 | 교육행정 | 변호사                                   |                             |                      |                       |                   |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변호사<br>사회복지사 1급(7)                    | 사회복지사 1급(3)                 | 사회복지사 1급             | 사회복지사 2급              | 사회복지사 3급          |
| 전산   | 전산   |                                       | 멀티미디어콘텐츠<br>제작전문가(9)        | 멀티미디어콘텐츠<br>제작전문가(6) | 멀티미디어콘텐츠<br>제작전문가(3)  | 멀티미디어콘텐츠<br>제작전문가 |
|      | 데이터  |                                       |                             |                      |                       |                   |
| 사서   | 사서   | 1급 정사서(5)                             | 1급 정사서<br>2급 정사서(6)         | 2급 정사서(3)            | 2급 정사서                | 준사서               |

| 직렬   | 계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      | 직류    |   |  |  |                                      |                                      |
| 공 업  | 일반전기  |   |  | 무대조명전문인1급  | 무대조명전문인2급                            | 무대조명전문인3급                            |
|      | 일반기계  |   |  | 무대기계전문인1급<br>무대음향전문인1급                             | 무대기계전문인2급<br>무대음향전문인2급               | 무대기계전문인3급<br>무대음향전문인3급               |
|      | 원 자 력 | 원자로조종<br>감독자(5),<br>핵연료물질<br>취급감독자(5),<br>방사성동위<br>원소취급자<br>(특수),<br>방사선취급<br>감독자(5)        | 원자로조종<br>감독자,원자로조종<br>사(3),<br>핵연료물질<br>취급감독자,<br>핵연료물질<br>취급자(3),<br>방사성동위<br>원소취급자<br>(일반)(3),<br>방사선취급<br>감독자 | 원자로조종사,<br>핵연료물질<br>취급자,<br>방사성동위<br>원소취급자<br>(일반) |                                      |                                      |
| 농 업  | 축 산   | 수의사(7)  | 수의사(3)   | 수의사  | 기축인공수정사                              |                                      |
| 수 의  | 수 의   | 수의사(7)  | 수의사(3)   | 수의사  |                                      |                                      |
| 해양수산 | 일반수산  | 수산질병관리사(7)<br>수의사(7)  | 수산질병관리사(3)<br>수의사(3)   | 수산질병관리사<br>수의사                                     |                                      |                                      |
|      | 일반선박  | 1급 항해사(3)<br>1급 기관사(3)  | 1급 항해사<br>2급 항해사(2)<br>1급 기관사<br>2급 기관사(2)   | 2급 항해사<br>3급 항해사(2)<br>2급 기관사<br>3급 기관사(2)         | 3급 항해사<br>4급 항해사<br>3급 기관사<br>4급 기관사 | 5급 항해사<br>6급 항해사<br>5급 기관사<br>6급 기관사 |
| 해양수산 | 선박항해  | 1급 항해사(3)   | 1급 항해사<br>2급 항해사(2)  | 2급 항해사<br>3급 항해사(2)                                | 3급 항해사<br>4급 항해사                     | 5급 항해사<br>6급 항해사                     |
|      | 선박기관  | 1급 기관사(3)   | 1급 기관사<br>2급 기관사(2)  | 2급 기관사<br>3급 기관사(2)                                | 3급 기관사<br>4급 기관사                     | 5급 기관사<br>6급 기관사                     |
| 보 건  | 보 건   | 의사(2)<br>한의사(2)<br>치과의사(2)<br>수의사(7)<br>약사(7)<br>한약사(7)<br>조산사(12)<br>간호사(12)<br>보건교육사1급(7) | 수의사(3)<br>약사(3)<br>한약사(3)<br>조산사(6)<br>간호사(6)<br>보건교육사1급(3)  | 수의사<br>약사<br>한약사<br>조산사(3)<br>간호사(3)<br>보건교육사1급    | 조산사<br>간호사<br>보건교육사2급                | 보건교육사3급                              |
|      | 방 역   | 의사(2)<br>한의사(2)<br>수의사(7)<br>약사(7)<br>간호사(12)   | 수의사(3)<br>약사(3)<br>간호사(6)  | 수의사<br>약사<br>간호사(3)                                | 간호사                                  |                                      |
| 식품위생 | 식품위생  | 위생사(12)<br>영양사(12)  | 위생사(8)<br>영양사(8)   | 위생사(5)<br>영양사(5)                                   | 위생사(2)<br>영양사(2)                     | 위생사<br>영양사                           |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직렬   | 계급    |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      | 직렬    | 직류 |   |  |   |  |  |
| 의료기술 | 의료기술  |    | 임상병리사(12)<br>방사선사(12)<br>물리치료사(12)<br>치과위생사(12)<br>작업치료사(12)<br>아경사(12)<br>방사선동위(12)<br>위소취급(특수)<br>방사선기(5)<br>가동차(5)<br>임상심리사(7) | 임상병리사(8)<br>보건의료정보관리사(8)<br>사선사(8)<br>물리치료사(8)<br>치과위생사(8)<br>작업치료사(8)<br>보건의료정보관리사(8)<br>안경사(8)<br>위소취급(일반)(3)<br>방사선기(3)<br>가동차(3)<br>임상심리사(1급)(3) | 임상병리사(5)<br>보건의료정보관리사(5)<br>사선사(5)<br>물리치료사(5)<br>치과위생사(5)<br>작업치료사(5)<br>보건의료정보관리사(5)<br>안경사(5)<br>위소취급(일반)<br>방사선기(1급)<br>가동차(1급)<br>임상심리사(2급)(3) | 임상병리사(2)<br>보건의료정보관리사(2)<br>사선사(2)<br>물리치료사(2)<br>치과위생사(2)<br>작업치료사(2)<br>보건의료정보관리사(2)<br>안경사(2)<br>임상심리사(2) | 임상병리사<br>보건의료정보관리사<br>사선사<br>물리치료사<br>치과위생사<br>작업치료사<br>보건의료정보관리사<br>안경사 |
| 의 무  | 일반의무  |    | 의사(2)<br>한의사(2)   |  |   |  |  |
|      | 치 무   |    | 치과의사(2)   |  |   |  |  |
| 약 무  | 약 무   |    | 약사(7)<br>한약사(7)   | 약사(3)<br>한약사(3)  | 약사<br>한약사   |  |  |
| 간 호  | 간 호   |    | 조산사(12)<br>간호사(12)  | 조산사(6)<br>간호사(6)   | 조산사(3)<br>간호사(3)  | 조산사<br>간호사   |  |
| 간호조무 | 간호조무  |    |   |  |   |  | 간호조무사  |
| 보건진료 | 보건진료  |    | 조산사(12)<br>간호사(12)  | 조산사(6)<br>간호사(6)   | 조산사(3)<br>간호사(3)  | 조산사<br>간호사   |  |
| 환 경  | 일반환경  |    | 의사(2)<br>수의사(7)   | 수의사(3)<br>약사(3)  | 수의사<br>약사   | 위생사(2)<br>청수시설운영관리사<br>2급  | 위생사<br>청수시설운영관리사<br>3급   |
|      | 수 질   |    | 약사(7)<br>위생사(12)<br>환경측정분석사(7)<br>청수시설운영관리사   | 위생사(8)<br>환경측정분석사(3)<br>청수시설운영관리사<br>1급(3)   | 위생사(5)<br>환경측정분석사<br>청수시설운영관리사<br>1급  |  |  |
|      | 대 기   |    |   |  |   |  |  |
|      | 폐 기 물 |    | 청수시설운영관리사<br>1급(7)  |  |   |  |  |
| 항 공  | 일반항공  |    | 운수용조종사<br>사업용조종사(5)<br>항공사(10)<br>항공기관사(10)<br>항공교통관제사(10)<br>항공정비사(10)<br>항공운장정비사(10)<br>항공운관리사(10)                              | 사업용조종사<br>항공사(6)<br>항공기관사(6)<br>항공교통관제사(6)<br>항공정비사(6)<br>항공운장정비사(6)<br>항공운관리사(6)  | 자가용조종사(3)<br>항공사(3)<br>항공기관사(3)<br>항공교통관제사(3)<br>항공정비사(3)<br>항공운장<br>정비사(3)<br>항공운관리사(3)  | 자가용조종사<br>항공사<br>항공기관사<br>항공교통관제사<br>항공정비사<br>항공운장정비사<br>항공운관리사  |  |
|      | 조 종   |    | 운수용조종사<br>사업용조종사(5)   | 사업용조종사   | 자가용조종사(3)   | 자가용조종사   |  |
|      | 정 비   |    | 항공정비사(10)<br>항공운장정비사(10)<br>항공기관사(10)   | 항공정비사(6)<br>항공운장정비사(6)<br>항공기관사(6)   | 항공정비사(3)<br>항공운장정비사(3)<br>항공기관사(3)  | 항공정비사<br>항공운장정비사<br>항공기관사  |  |
| 시 설  | 건 축   |    | 건축사(5)<br>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12)   | 건축사<br>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9)  |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6)  |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3)   |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  |
|      | 디 자 인 |    | 건축사(5)  | 건축사  |   |  |  |
| 속 기  | 속기    |    |   |  | 한글속기 1.2급(5)  | 한글속기 1.2.3급(2)   | 한글속기 1.2.3급  |
| 위 생  | 위생    |    |   |  | 위생사(5)<br>영양사(5)  | 위생사(2)<br>영양사(2)   | 위생사<br>영양사   |
|      | 사역    |    |   |  | 영양사(5)  | 영양사(2)   | 영양사  |
| 운전   | 운전    |    |   |  |   |  | 제1종운전면허(대형)<br>제1종운전면허(보통)<br>제2종운전면허(보통)                                |

- 비 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5의2 운전직류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4. (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 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안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별표 7]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제15조제8항 관련)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 종류           | 임용<br>등급 | 자격기준   |
|--------------|----------|--|
| 시간선택제<br>임기제 | 가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 나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              | 다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 라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 마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한시<br>임기제    | 5호       |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              | 6호       |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6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              | 7호       |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              | 8호       |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8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              | 9호       |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비고

-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 종 류                | 임용등급 | 자 격 기 준  |
|--------------------|------|--|
| 시 간 선 택 제<br>임 기 제 | 가급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br>2.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나급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br>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다급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br>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라급   |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마급   |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한 시<br>임 기 제       | 5호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2.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6호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7호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8호   | 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9호   |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5. 다른 법률에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을 경우 해당법률을 따르되 인사규칙(표준안)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 종 류                | 임용등급 | 자 격 기 준  |
|--------------------|------|--|
| 시 간 선 택 제<br>임 기 제 | 가급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br>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나급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br>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다급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br>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라급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
|                    | 마급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 한 시 임 기 제          | 5호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br>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6호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br>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7호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                    | 8호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등  |
|                    | 9호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선택제임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5. 다른 법률에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을 경우 해당법률을 따르되 인사규칙(표준안)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별표 8]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제15조제8항 관련)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 종류    | 임용등급 | 자 격 기 준  |
|-------|------|--|
| 전문임기제 | 가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 나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 종류    | 임용등급 | 자 격 기 준   |
|-------|------|---|
| 전문임기제 | 가급   | 1.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2.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3.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나급   | 1.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2.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 종류    | 임용등급 | 자 격 기 준  |
|-------|------|--|
| 전문임기제 | 가급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br>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br>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       | 나급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br>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br>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별표 9]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과 전직을 위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

(제15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 제3항 관련)

1. 연구직 공무원

| 직렬   | 계급<br>직류   | 연 구 관  | 연 구 사  |
|------|------------|--|--|
| 공업연구 | 기 계        |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승강기)       |
|      | 전 기        |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
|      | 전 자        | 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
|      | 금 속        |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 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
|      | 섬 유        | 기술사(섬유, 의류)  | 기사(섬유, 의류)   |
|      | 화 공<br>화 학 | 기술사(화공, 세라믹, 식품)   |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식품, 화학분석)  |
|      | 산업경영       | 기술사(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 기사(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
|      | 물 리        | 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 기사(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   |
| 농업연구 | 작 물        |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약사(7)  |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약사  |
|      | 농업환경       |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기상예보)약사(7) |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유기농업)약사, 위생사(5) |
|      | 작물보호       |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
|      | 산업곤충       |  | 기사(바이오화학제품제조)<br>생사기사 2급(6)<br>※1999. 3. 27. 이전 취득한 것을 말함.   |
|      | 원 예        |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조경,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
|      | 생명유전       | 기술사(종자, 농화학, 식품)   | 기사(종자,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직렬         | 계급<br>직류  | 연 구 관   | 연 구 사  |
|------------|-----------|---|--|
| 농업연구       | 농촌생활      | 기술사(섬유, 의류, 조정,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농화학, 토목,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br>평생교육사 1급, 사회복지사 1급(7)  | 기사(섬유, 의류, 조정,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토목, 자연생태복원, 인간공학)<br>평생교육사 2급, 사회복지사 1급, 소비자전문상담사 1급(3), 영양사(5), 위생사(5)   |
|            | 축 산       |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br>수의사(7)  |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br>수의사  |
|            | 농 공       |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용접, 금형,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정,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건설기계,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정비, 퀘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정,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자동차 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계설계) |
|            | 농식품<br>개발 | 기술사(식품, 축산, 농화학)  | 기사(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영양사(5), 위생사(5)  |
| 녹지연구       | 임 업       | 기술사(조정, 종자, 산림, 농화학)  | 기사(조정,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토양환경)   |
|            | 조 경       |   |  |
| 수의연구       | 수 의       | 기술사(축산)<br>수의사(7)   | 기사(축산)<br>수의사  |
| 해양수산<br>연구 | 해양환경      | 기술사(해양, 수질관리)   |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질환경)   |
|            | 수산자원      |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
|            | 수산양식      | 기술사(수산양식, 수질관리)   | 기사(수산양식, 수질환경, 바이오화학제품제조)  |
|            | 수산공학      | 기술사(해양, 어로)   | 기사(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
|            | 수산가공      | 기술사(수산제조, 식품)   | 기사(수산제조,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
|            | 수산경제      | 기술사(수산제조, 식품)   | 기사(수산제조,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
| 보건연구       | 의 학       |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br>수의사(7)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
|            | 약 학       | 약사(7), 한의사(2), 한약사(7)   | 약사, 한의사, 한약사   |
|            | 공중보건      | 기술사(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br>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br>약사(7), 한약사(7), 수의사(7), 전문간호사(7),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5) |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br>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간호사(3), 조산사(3),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병리사(5), 보건의료정보관리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위생사(5), 영양사(5)      |

| 직렬         | 계급<br>직류 | 연 구 관  | 연 구 사   |
|------------|----------|--|---|
| 환경연구       | 환 경      |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br><br>의사(2), 약사(7), 수의사(7), 환경측정분석사(7) | 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br><br>의사, 약사, 수의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
| 시설연구       | 토 목      |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
|            | 건 축      |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br>건축사   |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 방재안전<br>연구 | 안전관리     |  | 기사(방재)  |
|            | 재난관리     |  | 기사(방재)  |

비 고

1. 직류별로 연구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연구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경력경쟁임용의 경우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3년, 기타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후 ( )안의 기간(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 )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및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4.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지도직 공무원

| 직렬   | 계급<br>직류   | 지 도 관  | 지 도 사   |
|------|--|--|---|
| 농촌지도 | 농 업  |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토양환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
|      | 임 업  |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 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
|      | 잠 업  | 기술사(생사)  | 기사(바이오화학제품제조)<br>생사기사 2급(6)<br>※1999.3.27이전 취득  |
|      | 원 예  |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바이오화학제품제조, 토양환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
|      | 축 산  |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br>수의사(7)   |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br>수의사   |
|      | 가축위생   | 기술사(축산)<br>수의사(7)  | 기사(축산)<br>수의사   |
|      | 농촌사회   | 평생교육사 1급   | 청소년지도사(5), 평생교육사2급  |
|      | 농업기계   |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승강기) |
|      | 농업토목   |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기반, 건설안전, 교통) |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
| 농촌생활 | 기술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br><br>평생교육사 1급 | 기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br>평생교육사2급, 위생사(5), 영양사(5)                           |   |
|      |  |  |   |
| 어촌지도 | 어 촌  |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br>수산질병관리사(7)  |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br>수산질병관리사                                 |

비 고

1. 직류별로 지도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지도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경력경쟁임용의 경우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3년, 기타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 )안의 기간(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 )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및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4.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10]

##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

(제20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 직렬   | 계급   |       | 5급이상  | 6·7급   | 8·9급  |
|------|------|-------|---|--|---|
|      | 직렬   | 직류    |   |  |   |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 사회복지사 1급  | 사회복지사 2급   | 사회복지사 3급  |
| 전 산  | 전 산  | 데 이 터 |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 사 서  | 사 서  |       | 1급 정사서  | 2급 정사서   | 준사서   |
| 속 기  | 속 기  |       | 한글속기 1급   | 한글속기 1·2급  | 한글속기 1·2·3급   |
| 공 업  | 일반기계 |       |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 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br>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영사, 소방설비:기계분야, 사진기능사)   |
|      | 농업기계 |       |   |  |   |
|      | 기계운전 |       | 기술사(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 기능장(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br><br>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br><br>철도교통안전관리자<br><br>기능사(양화장치운전, 지게차운전,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컨테이너크레인운전, 타워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
|      | 일반전기 |       |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 기능장(전기)<br>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기철도, 소방설비:전기분야)  |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직렬  | 계급<br>직류 | 5급이상  | 6·7급   | 8·9급   |
|-----|----------|---|--|--|
|     | 전 자      | 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 기능장(전자기기)<br>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반도체설계)   | 산업기사(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
|     | 원 자 력    | 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 기사(원자력, 에너지관리)<br>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  |
|     | 금 속      |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br>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
|     | 섬 유      | 기술사(섬유, 의류, 품질관리)   | 기사(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br>생사기사2급(19 99. 3. 27 이전 취득)   | 산업기사(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
|     | 일반화학     | 기술사(화학, 세라믹, 화학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 기능장(위험물, 가스)<br>기사(화학류제조, 화학, 화학분석,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 산업기사(화학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
| 공 업 | 가 스      | 기술사(화학안전)   | 기능장(위험물, 가스)<br>기사(화학, 산업안전, 가스)   | 산업기사(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
|     | 자 원      | 기술사(자원관리, 화학류관리, 해양, 지질및지반, 광해방지)   | 기사(광산보안, 화학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응용지질 광해방지)   | 산업기사(광산보안, 화학류관리, 해양조사)  |
| 농 업 | 일반농업     |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 산업기사(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                         |
|     | 식물검역     |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토양환경,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
|     | 축 산      | 기술사(축산, 식품)<br>수의사  | 기사(축산, 식품)   | 산업기사(축산, 식품)<br>가축인공수정사  |



| 직렬   | 계급      |  | 5급이상   | 6·7급   | 8·9급                                |
|------|---------|--|--|--|-------------------------------------|
|      | 직류      |  |  |  |                                     |
|      | 생명유전    |  | 기술사(종자, 농화학, 식품)   | 기사(종자,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 산업기사(종자, 식품)                        |
| 녹 지  | 산림자원    |  |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 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 산업기사(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
|      | 산림보호    |  |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 기능장(산림)<br>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 산업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
|      | 산림이용    |  | 기술사(산림)  | 기사(산림, 임산가공)   | 산업기사(산림 임산가공)                       |
|      | 조 경     |  | 기술사(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 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 산업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
| 수 의  | 수 의     | 수의사  |  |  |                                     |
| 해양수산 | 일반해양    |  |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식품, 수질환경)       |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
|      | 일반수산    |  |  |  |                                     |
|      | 어 로     |  |  |  |                                     |
|      | 해양교통 시설 |  |  |  |                                     |
|      | 일반선박    |  |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1·2급 항해사 1·2급 기관사  | 기사(일반기계, 조선)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                             |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
|      | 선박항해    |  | 기술사(조선) 1·2급 항해사   | 기사(조선, 항로표지) 3·4급 항해사                                      |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
|      | 선박기관    |  |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1·2급 기관사   | 기사(일반기계) 3·4급 기관사  |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5·6급 기관사              |
| 보 건  | 보 건     |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전문간호사 |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위생사, 영양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임상심리사1급, 응급구조사1급 |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2급, 응급구조사2급 |                                     |
| 보 건  | 방 역     |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전문간호사  | 간호사  |  |                                     |
| 식품위생 | 식품위생    | 기술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 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영양사, 위생사  | 산업기사(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                                     |
| 위 생  | 위 생     |  | 위생사<br>영양사   | 위생사<br>영양사   |                                     |
|      | 사 역     |  | 영양사  | 영양사<br>환경기능사   |                                     |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직렬   | 계급    |   | 5급이상  | 6·7급   | 8·9급 |
|------|-------|---|---|--|------|
|      | 직류    |   |   |  |      |
| 의료기술 | 의료기술  | 기술사(방사선관리)<br>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br>한약사, 전문간호사, 방사성동<br>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br>급감독자  | 방사성 동위원소취급자(일반),<br>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임상병리사,<br>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br>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br>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1급, 의<br>지·보조기사       | 응급구조사2급  |      |
| 의 무  | 일반의무  | 의사, 한의사   |   |  |      |
|      | 치 무   | 치과의사  |   |  |      |
| 약 무  | 약 무   | 약사, 한의사, 한약사  |   |  |      |
| 간 호  | 간 호   |   | 간호사, 조산사  |  |      |
| 간호조무 | 간호조무  |   |   | 간호조무사  |      |
| 보건진료 | 보건진료  |   | 간호사, 조산사  |  |      |
| 환 경  | 일반환경  |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br>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br>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br>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br>지질및지반, 기상예보, 폐기물<br>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br>방사선관리, 광해방지)<br>의사, 약사, 수의사 | 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br>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br>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br>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br>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br>기상, 광해방지)<br>위생사 | 산업기사(조경, 산림, 식물보<br>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br>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br>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br>리, 자연생태복원) |      |
|      | 수 질   | 기술사(수자원개발, 상하수도,<br>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br>수질관리, 광해방지)   | 기사(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br>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br>해방지) 위생사   | 산업기사(산림, 해양조사, 수<br>산양식, 수질환경)   |      |
|      | 대 기   | 기술사(산림, 대기관리, 소음<br>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 기사(대기환경, 소음진동, 기상,<br>응용지질)   | 산업기사(산림, 대기환경, 소<br>음진동)   |      |
|      | 폐 기 물 | 기술사(화공, 산림, 상하수도,<br>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br>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br>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 기사(화공, 원자력, 에너지관<br>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br>토양환경, 광해방지)<br>위생사 2급, 위생시험사 2급  | 산업기사(화공, 산림, 에너지관<br>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      |
| 항 공  | 일반항공  |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br>운송용조종사   | 기사(항공)<br>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br>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br>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br>관리사  | 산업기사(항공)<br>자가용조종사   |      |
|      | 조 종   | 운송용조종사  |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 자가용조종사   |      |
|      | 정 비   |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 기사(항공)<br>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br>항공기관사  | 산업기사(항공)   |      |
| 시 설  | 도시계획  |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br>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br>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 기능장(건축일반시공)<br>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br>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br>조경, 지적, 교통)   |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br>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br>조경, 지적, 교통)                                       |      |

| 직렬   | 계급      |  | 5급이상   | 6·7급  | 8·9급  |
|------|---------|--|--|---|---|
|      | 직류      |  |  |   |   |
|      |         |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지질및지반) 건축사  | 지적, 교통, 응용지질, 방재)   |   |
|      | 일반토목    |  |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광해방지, 방재)       |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
|      | 수도토목    |  |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                         |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
|      | 농업토목    |  |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                         |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
|      | 건축      |  |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br>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      | 지적      |  |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
|      | 측지      |  |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
|      | 교통시설    |  | 기술사(토지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지질및지반)                              |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
|      | 도시교통시설계 |  | 기술사(토지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지질및지반)                              |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
|      | 디자인     |  | 기술사(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 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 산업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
| 방송통신 | 통신사     |  | 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  |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br>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계산기, 무선설비, 정보처리)                      | 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 제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통신선로, 무선설비, 방송통신) |
|      | 통신기술    |  |  |   |   |
|      | 전송기술    |  |  |   |   |
|      | 전자통신기술  |  |  |   |   |
| 조리   | 조리      |  |  | 조리기능장   |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br>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
|      |         |  |  |   |   |
| 방재안전 | 방재안전    |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br>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광해방지, 방재)                 |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설안전, 교통) |   |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직렬   | 계급   |  | 5급이상   | 6·7급   | 8·9급  |
|------|------|--|--|--|---|
|      | 직류   |  |  |  |   |
|      |      |  | 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 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 축목공)  |
| 시설관리 | 시설관리 |  |  |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사(전기, 기계정비, 조경) |
| 운 전  | 운 전  |  |  |  | 제1종운전면허(대형)<br>제1종운전면허(보통)<br>제2종운전면허(보통)                                 |

비 고

1. 직류별로 상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은 하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7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11]

### 분야별 자격증 가산 비율표

(제14조 관련)

1.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보건·의료기술·식품위생직렬을 말한다)의 직급별 자격증 가산비율

| 구 분           | 6·7급   |                                       | 8·9급  |    |
|---------------|--|---------------------------------------|---|----|
| 가산대상<br>자 격 증 | 변호사, 법무사, 공인 회계사, 변리사, 감정 평가사, 세무사, 관세 사, 공인노무사, 직업 상담사1급, 사회조사분석사1급,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 물류관리사, 철도교통 안전관리자직업상담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2 급 | 변호사, 법무사, 공인 회계사, 변리사, 감정 평가사, 세무사, 관세 사, 공인노무사, 직업 상담사1급, 사회조사분석사1급, 임상심리사1 급, 물류관리사, 철도 교통안전관리자, 직업 상담사2급, 사회조사분 석사2급, 임상심리사2 급 |    |
| 가산비율          | 5%   | 3%                                    | 5%  | 3% |

비고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중 기술·기능 분야의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11

2. 기술직군(연구·지도직 포함)의 가산비율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한다.

2. 기술직군(연구·지도직 포함)의 가산비율

| 구 분  | 6·7급, 연구사, 지도사 |      | 8·9급               |     |
|------|----------------|------|--------------------|-----|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 가산비율 | 5%             | 3%   | 5%                 | 3%  |

비고

1.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4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2. 해당 자격증이 임상심리사 1급 또는 임상심리사 2급인 경우에는 5%를 적용한다.

[별표 12]

###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제14조 관련)

가.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 직 렬  | 직 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
|------|-------|--|---|
| 행 정  | 일반행정  | —  | 변 호 사<br>변 리 사                            |
|      | 법무행정  |  |   |
|      | 재 경   | —  | 변 호 사<br>공인회계사<br>감정평가사                   |
|      | 국제통상  |  |   |
|      | 노 동   |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 변 호 사<br>공인노무사                            |
|      | 문화홍보  | —  | 변 호 사                                     |
|      | 감 사   | —  | 변 호 사<br>공인회계사<br>감정평가사<br>세 무 사          |
|      | 기업행정  |  | 변 호 사<br>공인회계사<br>감정평가사<br>세 무 사          |
| 세 무  | 지 방 세 | —  | 변 호 사<br>공인회계사<br>세 무 사                   |
| 교육행정 | 교육행정  |  | 변 호 사                                     |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  | 변 호 사                                     |
| 전 산  | 전 산   | 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br>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br>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 산업기사자격증<br>가산비율 적용 :<br>멀티미디어콘텐츠<br>제작전문가 |
|      | 데 이 터 |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br>정보보안   |   |
|      | 기 능 사 |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   |

| 직 렬 | 직 류  | 국가기술편제법에 따른 자격증  |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
|-----|--|--|----------------------------------|
| 공 업 | 일반기계   | <p>기술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p> <p>기능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p> <p>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p> <p>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p> <p>기능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p> |                                  |
|     | 농업기계   |  |                                  |
|     | 기계운전   | <p>기술사 :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p> <p>기능장 :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p> <p>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p> <p>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운송,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p> <p>기능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증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p>  | 산업기사자격증<br>가산비율 적용:<br>철도교통안전관리자 |
| 조선  | <p>기술사 : 조선</p> <p>기사 : 일반기계, 조선</p> <p>산업기사 : 조선, 컴퓨터응용가공</p> <p>기능사 :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p> |  |                                  |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직 렬 | 직 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
|-----|------|--|---|
|     | 일반전기 | <p>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p> <p>기능장 : 전기</p> <p>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p> <p>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p> <p>기능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p>   |   |
|     | 전자   | <p>기술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p> <p>기능장 : 전자기기</p> <p>기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p> <p>기능사 :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카드</p>   |   |
|     | 원자력  | <p>기술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p> <p>기사 : 원자력, 에너지관리</p> <p>산업기사 : 에너지관리</p>   | <p>기사자격증</p> <p>기선비율 적용 : 원자로 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취급자</p> |
|     | 금속   | <p>기술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p> <p>기능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p> <p>기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p> <p>기능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p> |   |
|     | 섬유   | <p>기술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p> <p>기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p> <p>기능사 : 염색</p> <p>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p>  |   |
|     | 일반화공 | <p>기술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p> <p>기능장 : 위험물, 가스</p> <p>기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p> <p>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p> <p>기능사 :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p>  |   |



| 직 렬 | 직 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
|-----|------|--|--|
|     | 자 원  | 기술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br>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br>산업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br>기능사 : 시추, 광산보안, 화약취급, 환경                       |  |
| 농 업 | 일반농업 |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br>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br>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br>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br>화훼장식<br>기능사 :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 기능사자격증<br>가산비율 적용:<br>농산물품질관리<br>사   |
|     | 식물검역 |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br>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림, 바이오화<br>학제품제조, 유기농업<br>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br>기능사 :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  |
|     | 축 산  | 기술사 : 축산, 식품<br>기사 : 축산, 식품<br>산업기사 : 축산, 식품<br>기능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 기사자격증<br>가산비율 적용:<br>수의사, 방사성<br>동위원소취급자<br>(일반), 방사선<br>취급감독자<br>산업기사 자격증<br>가산비율적용:가<br>축인공수정사 |
|     | 생명유전 | 기술사 :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br>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바이<br>오화학제품제조<br>산업기사 : 종자,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br>기능사 :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 기사자격증 가산<br>비율 적용 : 방사성<br>동위원소취급자<br>(일반), 방사선<br>취급감독자   |
| 녹 지 | 산림자원 | 기술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br>기사 :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br>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br>기능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 기사자격증 가산<br>비율 적용 : 나무의<br>사   |
|     | 산림보호 | 기술사 : 종자, 산림, 농화학<br>기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br>산업기사 :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br>기능사 : 산림   | 기사자격증 가산<br>비율 적용 : 나무의<br>사   |
|     | 산림이용 | 기술사 : 산림<br>기사 : 산림, 임산가공<br>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br>기능사 : 산림, 임산가공,  |  |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직 렬  | 직 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
|------|-------------|---|--|
|      | 조 경         | 기술 사 : 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에<br>기 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에, 식물보호<br>산업기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br>기 능 사 : 조경, 산림  | 기사자격증 가산<br>비율 적용 : 나무의<br>사   |
| 해양수산 | 일반해양        | 기술 사 : 해양, 수질관리<br>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br>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잠수<br>기 능 사 : 잠수  |  |
|      | 일반수산        | 기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br>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br>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br>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br>기 능 사 : 수산양식, 식품가공  | 기능사 자격증<br>가산비율 적용 :<br>수산물품질관리사   |
|      | 어 로         | 기술 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br>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수산양식,<br>어업생산관리<br>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  |
|      | 해양교통<br>시 설 | 기술 사 :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br>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br>기 능 장 : 전기, 전자기기<br>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br>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br>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br>공간정보, 항로표지<br>기 능 사 :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  |
| 보 건  | 보 건         | 기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br>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br>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br>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br>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br>처리, 식품<br>기 능 사 : 식품가공<br><br>임상심리사1급,<br>임상심리사2급 | 기사자격증 가산비<br>율 적용: 의사, 한<br>의사, 치과의사, 수<br>의사, 약사, 한약사,<br>방사성동위원소취<br>급자(특수, 일반),<br>방사선 취급감독자,<br>응급구조사 1급,<br>보건교육사 1급<br><br>산업기사 자격증<br>가산비율 적용: 임<br>상병리사, 보건의료<br>정보관리사, 방사선<br>사, 간호사, 조산사,<br>물리치료사, 치과기<br>공사, 치과위생사,<br>작업치료사, 위생<br>사, 영양사, 응급구<br>조사2급, 보건교육<br>사2급<br><br>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br>적용: 보건교육사3급 |

| 직 렬  | 직 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
|------|------|---|--|
|      | 방 역  |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수의사, 약사, 응급구조사 1급<br><br>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간호사, 위생사, 응급구조사 2급                                     |
| 식품위생 | 식품위생 | 기술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br>기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br>산업기사 :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br>기능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영양사, 위생사  |
| 의료기술 | 의료기술 | 기술사 방사선관리<br>기사 : 의공<br>산업기사 : 의공<br><br>임상심리사1급,<br>임상심리사2급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1급<br><br>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2급, 의지보조기사           |
| 환 경  | 일반환경 | 기술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br><br>기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토양환경,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기상, 광해방지<br><br>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br><br>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대기·수질)<br><br>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
|      | 수 질  | 기술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br>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br>산업기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br>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환경측정 분석사(수질환경분야로 한정한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1급<br><br>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2급<br><br>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3급 |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직 렬 | 직 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
|-----|-------|---|--|
|     | 대 기   | 기술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br>기능장 : 산림<br>기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br>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br>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br>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환경측정 분석사(대기)<br>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
|     | 폐 기 물 | 기술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br>기능장 : 산림<br>기사 : 화공, 농화학,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br>산업기사 : 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br>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br>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
| 시 설 | 도시계획  |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br>기능장 : 건축일반시공<br>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방재<br>산업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br>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
|     | 일반토목  |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br>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br>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br>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  |
|     | 수도토목  |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br>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br>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br>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  |
|     | 농업토목  |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br>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br>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br>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  |

| 직 렬  | 직 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
|------|---------|--|-------------------------|
|      | 건축      | 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br>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br>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br>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br>기능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 기사자격증 가산<br>비율 적용 : 건축사 |
|      | 측지      | 기술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br>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br>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br>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                         |
|      | 교통시설    |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br>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br>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br>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                         |
|      | 도시교통시설계 |  |                         |
|      | 디자인     | 기술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br>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br>산업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br>기능사 :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응용, 웹디자인   | 기사자격증 가산<br>비율 적용 : 건축사 |
| 방재안전 | 방재안전    |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br>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br>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br>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br>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br>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                         |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직 렬  | 직 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
|------|--------|--|---------------|
| 방재통신 | 통신사    | 기술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br>기능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br>기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               |
|      | 통신기술   | 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               |
|      | 전송기술   | 기능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br>전화교환기능사(1997. 6. 1이전 취득)   |               |
|      | 전자통신기술 |  |               |
| 시설관리 | 시설관리   | 기능장 : 전기<br>기사 :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br>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br>기능사 : 전기, 기계정비, 조경 |               |

비 고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방호, 시설관리 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및 등급을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함

나. 연구·지도직

| 직 렬  | 직 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
|------|------|--|---------------|
| 공업연구 | 기계   | <p>기술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p> <p>기능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p> <p>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p> |               |
| 농촌지도 | 농업기계 | <p>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p>  |               |
| 공업연구 | 전기   | <p>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p> <p>기능장 : 전기</p> <p>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p> <p>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p>  |               |
|      | 전자   | <p>기술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p> <p>기능장 : 전자기기</p> <p>기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p>   |               |
|      | 금속   | <p>기술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p> <p>기능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p> <p>기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p>                            |               |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직 렬  | 직 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
|------|--------|---|-----------------------------------|
|      | 섬 유    | 기술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br>기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br>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                                   |
|      | 화 공    | 기술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br>기능장 : 위험물, 가스<br>기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                                   |
|      | 화 학    | 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                                   |
|      | 산업경영   | 기술사 : 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br>기사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br>산업기사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                                   |
|      | 물 리    | 기술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br>기사 : 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br>산업기사 : 정밀측정, 전자, 에너지관리   |                                   |
| 농업연구 | 농식품 개발 | 기술사 : 식품, 농화학, 축산<br>기사 :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축산<br>산업기사 : 식품, 축산, 유기농업  | 산업기사 자격증<br>가산 비율 적용<br>:영양사, 위생사 |
|      | 작 물    |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br>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                                   |
| 농촌지도 | 농 업    |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                                   |
| 농업연구 | 원 예    |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식품<br>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조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                                   |
| 농촌지도 | 원 예    |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유기농업   |                                   |



| 직 렬  | 직 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
|------|------|--|--|
| 농업연구 | 농업환경 | 기술사 :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기상예보<br><br>기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기상, 유기농업<br><br>산업기사 :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유기농업 |  |
|      | 산업곤충 | 기사 : 바이오화학제품제조<br>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  |  |
| 농촌지도 | 잡업   |  |  |
| 농업연구 | 작물보호 |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br><br>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br><br>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  |
|      | 생명유전 | 기술사 : 종자, 농화학, 식품<br><br>기사 : 종자,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br><br>산업기사 : 종자, 식품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
|      | 농촌생활 | 기술사 :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농어업토목,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br><br>기사 :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토목, 자연생태복원, 인간공학, 바이오화학제품제조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br>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영양사, 위생사 |
| 농촌지도 | 농촌생활 | 산업기사 : 섬유, 패션디자인,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  |
| 농촌지도 | 농업경영 |  |  |
| 농촌지도 | 농촌사회 |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1급<br>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청소년지도사 1급, 평생교육사 2급                       |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직 렬    | 직 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
|--------|------|--|---|
| 농업연구   | 농 공  | <p>기술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인간공학, 소음진동, 금속재료,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p> <p>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p> <p>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p>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
| 농업연구   | 축 산  | <p>기술사 : 축산, 식품</p> <p>기사 : 축산, 식품</p>   | <p>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가축인공수정사</p> |
| 농촌지도   | 축 산  | 산업기사 : 축산, 식품  |   |
| 녹지연구   | 임 업  | <p>기술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p> <p>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p> <p>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p>   |   |
| 농촌지도   | 임 업  |  |   |
| 수의연구   | 수 의  | <p>기술사 : 축산</p> <p>기사 : 축산</p>   | <p>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p>  |
| 농촌지도   | 가축위생 | 산업기사 : 축산  |   |
| 해양수산연구 | 해양환경 | <p>기술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p> <p>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p> <p>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p>  |   |
|        | 수산자원 |  |   |
| 어촌지도   | 어 촌  |  |   |

| 직 렬         | 직 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
|-------------|------|---|--|
| 해양수산<br>연 구 | 수산양식 | 기 술 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br>기 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바이오화학제품제조<br>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  |
|             | 수산공학 | 기 술 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br>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br>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  |
|             | 수산가공 | 기 술 사 : 수산제조, 식품<br>기 사 : 수산제조, 수산양식,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br>산업기사 : 식품  |  |
| 보건연구        | 의 학  | -   | 기사 자격증<br>가산비율 적용<br>: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
|             | 약 학  | -   | 기사 자격증<br>가산비율 적용<br>: 약사, 한의사, 한약사  |
|             | 공중보건 |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br><br>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br><br>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의공<br><br>임상심리사 1급<br>임상심리사 2급 | 기사 자격증<br>가산비율 적용<br>: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br>산업기사 자격증<br>가산비율 적용 :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 |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직 렬     | 직 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
|---------|----------------|---|--|
| 환경연구    | 환 경            | <p>기 술 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p> <p>기 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p> <p>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p> | <p>기사 자격증<br/>가산비율 적용<br/>: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p> <p>산업기사 자격증<br/>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p> |
| 시설연구    | 토 목            | <p>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  |
| 농촌지도    | 농업토목           | <p>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p> <p>기 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  |
| 시설연구    | 건 축            | <p>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p> <p>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p> <p>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 <p>기사 자격증<br/>가산비율 적용<br/>: 건축사</p>  |
| 방재안전 연구 | 안전 관리<br>재난 관리 | <p>기 사 : 방재</p>   |  |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표 13]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

(제15조제3항 관련)

| 임용예정직급            |                                | 2급 · 연구관<br>지도관         | 3급 · 연구관<br>지도관 | 4급 · 연구관<br>지도관 | 5급 · 연구관<br>지도관 | 6급 · 연구사<br>지도사  | 7급 · 연구사<br>지도사 | 8급         | 9급    |
|-------------------|--------------------------------|-------------------------|-----------------|-----------------|-----------------|------------------|-----------------|------------|-------|
| 직무분야              |                                | 치안감                     | 경무관             | 총 경             | 경 정             | 경 경<br>감 위       | 경 사             | 경 장        | 순 경   |
| 경 찰 공 무 원         |                                | 소 방 감                   | 소 방 감           | 소 방 정           | 소 방 령           | 소 방 경 위<br>소 방 위 | 소 방 장           | 소 방 교      | 소 방 사 |
| 소 방 공 무 원         |                                | 대 령                     | 중 령             | 소 령             | 대 위             | 중 위              | 소 위<br>위 사      | 상 중<br>사 사 | 하 사   |
| 군 인               |                                | 교 수<br>(3년이상)           | 교 수             | 부교수             | 조교수             | 전 임 사            |                 |            |       |
| 교육공무원 (사립학교교원포함)  | 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포함)교원              |                         |                 |                 |                 |                  |                 |            |       |
|                   | 초·중·고등학교교원 및 기타 교육공무원          |                         |                 |                 |                 |                  |                 |            |       |
|                   | 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1적용 대상자            |                         |                 |                 |                 |                  |                 |            |       |
|                   | 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2적용 대학봉급액란 적용대상자   |                         |                 |                 |                 |                  |                 |            |       |
|                   | 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2중 전문대학 봉급액란 적용대상자 |                         |                 |                 |                 |                  |                 |            |       |
| 판 사 · 검 사         |                                | 9호봉 이상                  | 6호봉 이상          | 4호봉 이상          |                 |                  |                 |            |       |
| 기능 직 공 무 원        |                                |                         |                 |                 |                 | 6급 이상            | 7급              | 8급         | 9급 이하 |
| 관련 직무분야 박사 학위 소 자 |                                | 박사학위 소지후 10년이상          | 박사학위 소지후 8년이상   | 박사학위 소지후 4년이상   | 박사학위 소지자        |                  |                 |            |       |
| 관련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자    |                                |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이상 |                 |                 |                 | 6년               | 3년              | 3년         | 3년    |

비 고

1. 위 표의 구분에 따른 당해계급의 경력에 해당된 후 동경력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3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위 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 표 중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소요경력연수에 달한 때에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다.
3. 민간근무 경력자의 경우,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의 범위는 임용권자가 미리 정하되,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본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한 사람이어야 한다.

[별표 14]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제15조제4항)

1. 기술직공무원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

| 직 렬  | 직 류          | 관 련 학 과   |
|------|--------------|---|
| 공 업  | 일반기계         |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
|      | 원 자 력        | 원자력, 원자력공학, 원자핵공학   |
|      | 조 선          | 조선, 선박기계공학, 조선공학  |
|      | 일반전기         |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
|      | 섬 유          | 섬유, 방직, 제직, 염색, 섬유공학  |
|      | 일반화학         | 화학(화학, 공업화학, 농화학)<br>공학(화학공학, 식품공학, 입산가공학, 제지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
|      | 금 속          | 금속(금속공업), 야금, 주물(주물, 목형주조), 판금용접                                |
|      | 자 원          | 광산, 자원개발, 지질  |
| 녹 지  | 산림자원         | 임업, 임학, 입산가공학, (농)화학, (농)생물학                                    |
|      | 산림보호         | 임업, 임학, (농)생물학  |
|      | 산림이용         | 임업, 임학, 입산가공학, (농)화학  |
| 농 업  | 일반농업         | 농업, 잡업, 연초, 제사, 원예, 특수재배, 농예, 농업경영, 농기계                         |
|      | 축 산          | 축산(학), 낙농(학), 사료(학), 수의학  |
| 수 의  | 수 의          | 수의학   |
| 환 경  | 일반환경         | 환경관리, 환경공학, 환경학, 화학, 화학공학, 생물학                                  |
|      | 일반해양<br>일반수산 | 수산 및 해양계통의 학과   |
| 해양수산 | 일반선박         | 항해(학), 통신(해양계에 한함),<br>통신공학(해양계에 한함), 기관(학)                     |
|      | 선박항해         | 항해(학)   |
|      | 선박기관         | 기관(학), 기관공학, 통신(해양계에 한함)  |
|      | 어 로          | 어로학, 항해(어선분야)학, 어업  |
|      | 해양교통시설       | 해양학, 해양공학, 해양토목, 항해(학), 어업                                      |
|      | 시 설          | 일반토목  |
| 방송통신 | 통 신 사        | 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br>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
|      | 통신기술         |   |
|      | 전송기술         |   |
|      | 전자통신기술       |   |
| 항 공  | 일반항공         | 항공정비, 항공운항학, 항공기계공학, 항공공학, 항공경영학                                |
|      | 조 중          | 항공운항학   |
|      | 정 비          | 항공정비, 항공기계공학, 항공공학  |
| 약 무  | 약 무          | 제약학, 약학, 위생제약학  |
| 보 건  | 보 건          | 위생, 임상병리, 방사선, 물리치료, 치기공, 보건, 의학, 치의학                           |

※ 수의·지적·일반선박·선박항해·선박기관·일반항공·조중·정비·약무·약제·간호 직류는 지방공무원인사규칙(표준안) 별표 4에 규정한 자격증소지자에 한함

2. 지도직공무원

| 직 렬     | 관 련 학 과   |
|---------|---|
| 농 촌 지 도 | 농업, 농학, 농생물학, 식물보호학,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잠업, 잠사학, 원예(학), 축산(학), 수의학, 낙농(학), 사료(학), 농경제학, 농가정학, 농업교육(농촌지도 전공), 농업기계, 기계공학, 농공학, 농업토목, 토목공학, 농공학, 식품가공, 영양, 식품영양, 농산제조, 농화학, 아동, 가정교육, 가정복지, |
| 어 촌 지 도 | 수산경영, 증식학, 냉동학, 양식학, 수산가공, 수산, 해양   |

[별표 15]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

(제15조제5항 관련)

| 구분             | 계급 | 3급  | 4급 | 5급 | 6급 이하 |
|----------------|----|-----|----|----|-------|
| 근무경력 및<br>연구경력 | 박사 | 8년  | 4년 | -  | -     |
|                | 석사 | 12년 | 8년 | 4년 | -     |

비 고 :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은 박사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임

[별표 16]

**연구관 및 지도관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

(제15조제5항 관련)

| 구분       | 계급 |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 제1호 가목·나목 및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br>·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의2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지도관 |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 제1호 다목·제2호 나목 및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br>·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의2 제1호 나목·제2호 나목 및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지도관 |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 제1호 라목·제2호 다목 및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br>·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의2 제1호 다목·제2호 다목 및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지도관 | ·연구사 및 지도사 |
|----------|----|---|--|--|------------|
| 연구<br>경력 | 박사 | 8년  | 4년   | -  | -          |
|          | 석사 | 12년   | 8년   | 4년   | -          |

비 고 : 연구경력은 해당 학위를 취득한 후의 연구경력임



[별표 17]

**연구직·지도직공무원의 기술직렬 전직시 전직시험면제 기준 및  
직무내용이 유사한 기술직렬 기준표**

(제20조제4항 관련)

1. 연구직공무원

| 연구직  |      | 기술직  |      |
|------|------|------|------|
| 직렬   | 직류   | 직렬   | 직류   |
| 공업연구 | 기계   | 공업   | 일반기계 |
|      |      |      | 농업기계 |
|      | 전기   |      | 기계운전 |
|      |      |      | 일반전기 |
|      | 전자   |      | 전자   |
|      | 금속   |      | 금속   |
|      | 섬유   |      | 섬유   |
|      | 화학공학 |      | 화학공  |
|      | 화학   |      | 공    |
| 물리   | -    |      |      |
| 농업연구 | 작물   | 농업   | 일반농업 |
|      |      | 농촌지도 | 농업   |
|      | 농업환경 | 농업   | 일반농업 |
|      |      | 농촌지도 | 농업   |
|      | 작물보호 | 농업   | 일반농업 |
|      |      | 농촌지도 | 식물검역 |
|      | 농업경영 | 농업   | 일반농업 |
|      |      | 농촌지도 | 농업   |
|      | 농업경영 | 농업   | 농업경영 |
|      |      | 농촌지도 | 농업경영 |
|      | 산업곤충 | 농촌지도 | 잠업   |
|      | 원예   | 농업   | 일반농업 |
|      |      | 농촌지도 | 농업   |
|      |      |      | 원예   |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연구직    |      | 기술직        |              |
|--------|------|------------|--------------|
| 직렬     | 직류   | 직렬         | 직류           |
| 농업연구   | 생명유전 | 농업         | 일반농업         |
|        | 농촌생활 | 농업         | 일반농업         |
|        |      | 농촌지도       | 농촌사회<br>농촌생활 |
|        | 축산   | 농업         | 축산           |
|        |      | 농촌지도       | 축산           |
|        | 농공   | 공업시설       | 농업기계<br>농업토목 |
|        |      | 농촌지도       | 농업기계<br>농업토목 |
|        |      |            | 농업토목         |
| 녹지연구   | 임업경영 | 임업<br>전직류  |              |
| 수의연구   | 수의   | 수의<br>농촌지도 |              |
| 해양수산연구 | 해양환경 | 환경         | 수질           |
|        |      | 수산         | 일반수산         |
|        |      | 어촌지도       | 어촌           |
|        | 수산자원 | 수산         | 일반수산         |
|        |      | 어촌지도       | 어촌           |
|        | 수산양식 | 어촌지도       | 어촌           |
|        | 수산공학 | 해양수산       | 어로           |
|        |      | 어촌지도       | 어촌           |
| 수산가공   | 어촌지도 | 어촌         |              |
| 수산경제   | 해양수산 | 일반수산       |              |
|        | 어촌지도 | 어촌         |              |
| 보건연구   | 의학   | 의무         | 일반의무<br>치무   |
|        | 약학   | 약무         | 약무           |
|        | 공중보건 | 보건         | 보건           |
| 식품위생   |      | 식품위생       |              |
| 환경연구   | 환경   | 환경<br>전직류  |              |
| 시설연구   | 토목   | 시설         | 일반토목<br>농업토목 |
|        | 건축   |            | 건축           |
| 방재안전연구 | 안전관리 | 방재안전       | 방재안전         |
|        | 재난관리 |            |              |

2. 지도직공무원

| 지 | 도 | 직 | 기 | 술 | 직 |   |   |   |   |   |   |
|---|---|---|---|---|---|---|---|---|---|---|---|
| 직 | 렬 | 직 | 렬 | 직 | 류 |   |   |   |   |   |   |
| 농 | 촌 | 지 | 도 | 농 | 업 |   |   |   |   |   |   |
|   |   |   |   | 농 | 업 | 농 | 업 | 연 | 구 |   |   |
|   |   |   |   |   |   | 일 | 반 | 농 | 업 |   |   |
|   |   |   |   |   |   | 작 | 물 | 보 | 호 |   |   |
|   |   |   |   |   |   | 농 | 업 | 환 | 경 |   |   |
|   |   |   |   |   |   | 농 | 업 | 경 | 영 |   |   |
|   |   |   |   | 원 | 예 |   |   |   |   |   |   |
|   |   |   |   | 농 | 업 | 경 | 영 |   |   |   |   |
|   |   |   |   | 임 | 업 | 농 | 업 | 연 | 구 |   |   |
|   |   |   |   |   |   | 농 | 업 | 연 | 구 |   |   |
|   |   |   |   | 잠 | 원 | 예 | 농 | 업 | 연 | 구 |   |
|   |   |   |   |   |   |   | 농 | 업 | 연 | 구 |   |
|   |   |   |   | 축 | 산 | 수 | 의 |   |   |   |   |
|   |   |   |   |   |   | 수 | 의 | 연 | 구 |   |   |
|   |   |   |   | 가 | 축 | 위 | 생 | 농 | 업 | 연 | 구 |
|   |   |   |   |   |   |   |   | 농 | 업 | 연 | 구 |
|   |   |   |   | 농 | 촌 | 사 | 회 | 공 | 업 |   |   |
|   |   |   |   |   |   |   |   | 공 | 업 | 연 | 구 |
|   |   |   |   | 농 | 업 | 기 | 계 | 시 | 설 |   |   |
|   |   |   |   |   |   |   |   | 농 | 업 | 연 | 구 |
|   |   |   |   | 농 | 촌 | 생 | 활 | 해 | 양 | 수 | 산 |
|   |   |   |   |   |   |   |   | 해 | 양 | 수 | 산 |
|   |   |   |   | 어 | 촌 | 지 | 도 | 일 | 반 | 수 | 산 |
| 어 | 로 |   |   |   |   |   |   |   |   |   |   |
| 어 | 촌 | 지 | 도 | 전 | 직 | 류 |   |   |   |   |   |

[별표 18]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기준표

(제25조제1항 관련)

| 계 급 | 연 구 직  | 지 도 직   |
|-----|--|---|
| 2 급 | [별표 2] 제1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및 동표 제1호 나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 [별표 2의2]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
| 3 급 | [별표 2] 제1호 나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 [별표 2의2]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
| 4 급 | [별표 2] 제1호 다목, 제2호 나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 [별표 2의2] 제1호 나목, 제2호 나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
| 5 급 | 연구관으로 재직한 기간   | 지도관으로 재직한 기간                                  |
| 6 급 | 연구사로서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 지도사로서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
| 7 급 | 연구사로서 재직한 기간   | 지도사로서 재직한 기간                                  |
| 8 급 |  |   |
| 9 급 |  |   |

비고 : [별표 2], [별표 2의2] 는 각각 「지방 연구직 및 지도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규정」의 별표를 말한다.

[별표 19]

###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

(제25조제2항 관련)

| 구분                                       |                                    | 상당 계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 일반직                                      |                                    | 4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                                    | 기관·부서의<br>장인<br>연구관<br>지도관 | 연구관<br>지도관                               | 연구사<br>지도사                               |  |  |   |    |
| 임기제<br>공무원                               | 일반임기제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  | (국가)전문임기제                          | “가급”으로<br>채직한 기간           | “나급”으로<br>채직한 기간                         | “다급”으로<br>채직한 기간                         | “라급”으로<br>채직한 기간                       | “마급”으로서<br>“마급”<br>봉급한계액의<br>6할을 초과한<br>봉급을 받고<br>채직한 기간 | “마급”으로서<br>“마급”<br>봉급한계액의<br>6할 이하의<br>봉급을 받고<br>채직한 기간 |    |
|  | (지방)전문임기제                          | “가급”으로<br>채직한 기간           | “나급”으로<br>채직한 기간                         |  |  |  |   |    |
|  | 한시임기제                              |                            | “5호”로<br>채직한 기간                          | “6호”로<br>채직한 기간                          | “7호”로<br>채직한 기간                        | “8호”로<br>채직한 기간  | “9호”로<br>채직한 기간   |    |
|  | 시간선택제임기제                           |                            | “가급”으로<br>채직한 기간                         | “나급”으로<br>채직한 기간                         | “다급”으로<br>채직한 기간                       | “라급”으로<br>채직한 기간   | “마급”으로<br>채직한 기간  |    |
| 전문경력관                                    |                                    | “가”군<br>27호봉 이상            | “가”군 26호봉<br>이하                          | “나”군<br>28호봉 이상                          | “나”군<br>27호봉 이하                        | “다”군<br>28호봉 이상  | “다”군<br>27호봉 이하   |    |
| 별정직공무원                                   |                                    | 4급상당                       | 5급상당                                     | 6급상당                                     | 7급상당                                   | 8급상당   | 9급상당  |    |
| 경찰공무원                                    |                                    | 총경                         | 경정                                       | 경감<br>경위                                 | 경사                                     | 경장   | 순경  |    |
| 소방공무원                                    |                                    | 소방정<br>지방소방정               | 소방령<br>지방소방령                             | 소방경<br>소방위<br>지방소방경<br>지방소방위             | 소방장<br>지방소방장                           | 소방교<br>지방소방교   | 소방사<br>지방소방사  |    |
| 군인                                       |                                    | 소령                         | 대위                                       | 중위                                       | 소위·준위                                  | 원사·상사<br>·중사   | 하사  |    |
| 군무원(특정직)<br>국가정보원(특정직·일반직)<br>경호공무원(특정직) |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 교육<br>공무원                                | 대학교원<br>(전문대학 포함)                  | 부교수                        | 조교수                                      | 전임강사                                     |  |  |   |    |
|  | 초·중등<br>교원<br>및<br>기타<br>교육<br>공무원 | 초·중등교원<br>봉급표<br>적용대상자     | 24호봉이상                                   | 16-23호봉                                  | 12-15호봉                                | 11호봉이하   |   |    |
|  |                                    | 대학교원<br>봉급표<br>적용대상자       | 대학 :<br>17-23호봉<br><br>전문대학 :<br>19-25호봉 | 대학 :<br>11-16호봉<br><br>전문대학 :<br>13-18호봉 | 대학 :<br>7-10호봉<br><br>전문대학 :<br>9-12호봉 | 대학 :<br>6호봉이하<br><br>전문대학 :<br>8호봉이하                     |   |    |
| 판사·검사                                    |                                    | 42호봉                       |  |  |  |  |   |    |

[별표 20]

### 일반직 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구분표

(제27조 관련)

1. 5급부터 9급까지

| 계급<br>직렬           | 5 급  | 6급·7급   | 8급·9급  |
|--------------------|--|---|--|
| 행정,<br>세무,<br>사회복지 |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경영·기술지도사 (지도사자격시험 합격자에 한함)  | 사회복지사 1급  | 사회복지사 2급   |
| 전 산                | 기술사(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 응용, 정보통신)   | 기사(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 응용, 전자계산기, 정보보안, 정보통신)   | 산업기사(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제어, 정보보안,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
| 사 서                | 1급 정사서   | 2급 정사서  | 준사서  |
| 공 업<br>(기 계)       |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 시스템응용, 정보통신, 항공 기관, 항공기체, 기계안전, 공장 관리, 소방, 품질관리, 조선, 소음진동), 운송용조종사 |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 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 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 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 기계, 전기, 전기공사,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전파 전자통신, 항공,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소방설비 <기계분야>, 조선, 일반기계, 반도체설계, 무선설비, 방송 통신, 교통)<br>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전기, 전자기 기, 통신설비, 가스) 사업용 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자가용조종사, 항공공장정비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 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 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 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전기, 전기공사,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 통신, 항공, 에너지관리, 산업 안전, 품질경영, 소방설비 <기계분야>, 영사, 교통, 조선),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

| 계급<br>직렬                     | 5 급   | 6급·7급   | 8급·9급   |
|------------------------------|---|---|---|
| 공<br>업<br>( 전 기 )            |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소방, 품질관리,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br>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 승강기,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원자력, 에너지관리)<br>기능장(전기, 전자기기)<br>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br>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산업안전, 전기철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경영, 승강기,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에너지관리)<br>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
| 공<br>업<br>( 금 속 )            |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 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br>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 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
| 공<br>업<br>( 섬 유 )            | 기술사(섬유, 의류, 품질관리)   | 기사(섬유, 의류, 품질경영, 산업안전)  | 산업기사(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품질경영, 산업안전)   |
| 공<br>업<br>( 화 공 )<br>( 가 스 ) | 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경영)<br>기능장(위험물, 가스)<br>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 산업기사(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경영)<br>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
| 공<br>업<br>( 자 원 )            | 기술사(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응용지질, 지질및지반)   | 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 산업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
| 농<br>업<br>( 농 업 )            |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 산업기사(종자, 식물보호, 식품, 유기농업)  |
| 농<br>업<br>( 축 산 )            | 기술사(축산, 식품)<br>수의사  | 기사(축산, 식품)  | 산업기사(축산, 식품)<br>가축인공수정사   |
| 녹<br>지                       |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 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 산업기사(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
| 수<br>의                       | 수의사   |   |   |
| 해<br>양<br>수<br>산<br>( 수 산 )  |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향로표지, 식품, 수질환경)  |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향로표지, 수질환경, 식품)  |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계급<br>직렬           | 5 급  | 6급·7급   | 8급·9급  |
|--------------------|--|---|--|
| 해 양 수 산<br>( 선 박 ) | 기술사(조선, 기계, 산업기계설비)<br>1·2급항해사, 1·2급기관사  | 기사(조선, 일반기계, 항로표지)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   | 산업기사(조선, 컴퓨터응용가공, 항로표지)<br>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
| 보 건                | 기술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br>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 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br>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영양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
| 식 품 위 생            | 기술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방사선관리)   | 기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영양사, 위생사  | 산업기사(축산, 식품, 품질경영, 포장)   |
| 의 료 기 술            | 기술사(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br>기사(응급구조사 1급, 의지·보조기)   | 응급구조사 2급   |
| 의 무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  |
| 약 무                | 약사, 한의사, 한약사   |   |  |
| 간 호                |  | 간호사, 조산사  |  |
| 보 건 진 료            |  | 간호사, 조산사  |  |
| 환 경                | 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화공, 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토양환경, 자연환경 관리)<br>의사, 약사, 수의사 | 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화공,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 토양환경)<br>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 산업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건설재료 시험, 토목, 조경, 산림,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br>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
| 항 공                |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정보통신), 운송용조종사  | 기사(항공, 정보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br>기능장(통신설비)<br>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   | 산업기사(항공, 정보통신, 방송통신, 무선설비)<br>자가용조종사   |
| 시 설<br>(도시계획)      |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및해안, 도로및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및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br>건축사  | 기사(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건축, 조경, 지적, 도시계획, 교통, 방재)<br>기능장(건축일반시공)  | 산업기사(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건축, 건축일반시공, 조경, 지적, 교통)                                      |



| 계급<br>직렬                   | 5 급  | 6급·7급   | 8급·9급   |
|----------------------------|--|---|---|
| 시 설<br>( 토 목 ,<br>수도토목)    | 기술사(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및해안, 도로및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및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및지반, 교통) |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방재)       |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
| 시 설<br>( 건 축 )             |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br>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 시 설<br>( 지 적 )             | 기술사(지적, 측량및지형공간정보)   | 기사(지적, 측량및지형공간정보)   | 산업기사(지적, 측량및지형공간정보)   |
| 시 설<br>( 측 지 )             | 기술사(측량및지형공간정보, 지적)   | 기사(측량및지형공간정보, 지적)   | 산업기사(측량및지형공간정보, 지적)   |
| 시 설<br>( 교 통 )             | 기술사(교통, 도시계획, 조경,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지적, 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및공항, 철도, 토목시공, 건설안전)                                   | 기사(교통, 도시계획조경,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지적,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건설안전)                 | 산업기사(교통, 조경,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지적, 철도토목, 건설재료시험, 토목, 건설안전)                           |
| 시 설<br>( 디 자 인 )           | 기술사(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 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 산업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
| 방 송 통 신<br>( 통 신 사 )       | 기술사(정보통신, 컴퓨터시스템 응용, 전자응용)   | 기사(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br>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전자, 정보처리,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계산기제어)                |
| 방 송 통 신<br>( 통 신 기 술 )     | 기술사(정보통신, 컴퓨터시스템 응용, 전자응용)   | 기사(정보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전파전자통신)<br>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방송통신, 전자, 정보처리,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계산기제어)          |
| 방 송 통 신<br>( 전 자 통 신 기 술 ) | 기술사(정보통신,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 기사(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br>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 산업기사(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처리, 무선설비, 방송통신, 통신선로)                |
| 위 생                        |  | 기술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br>기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br>위생사, 영양사 | 산업기사(식품, 축산, 품질경영, 포장)<br>환경기능사   |
| 시 설 관 리                    |  | 기능장(전기)<br>기사(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br>기능사(전기, 기계정비, 조경) |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계급<br>직렬 | 5 급 | 6급·7급  | 8급·9급   |
|----------|-----|--|---|
| 토 목 운 영  |     | 기술사(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및해안, 도로및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및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br>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
| 건 축 운 영  |     |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br>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br>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br>건축사  |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 통 신 운 영  |     | 기술사(정보통신)<br>기사(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br>기능장(통신설비, 전자기기)   |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정보처리)   |
| 전 기 운 영  |     |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br>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경영, 승강기)<br>기능장(전기)<br>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경영, 승강기)<br>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
| 기 계 운 영  |     |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정보통신,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br>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정보통신,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소방설비<기계분야>)<br>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br>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 산업기사(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정보통신,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소방설비<기계분야>, 영사)<br>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

| 계급<br>직렬                         | 5 급 | 6급·7급   | 8급·9급  |
|----------------------------------|-----|---|--|
| 화 공 운 영                          |     | 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br>기사(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br>기능장(위험물, 가스)<br>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 산업기사(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br>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
| 가 스 운 영                          |     | 기술사(가스, 화공, 화공안전)<br>기사(가스, 화공, 산업안전)<br>기능장(가스, 위험물)   | 산업기사(가스, 위험물)  |
| 선 박 항 해<br>운 영<br>선 박 기 관<br>운 영 |     | 기술사(조선, 기계, 산업기계설비)<br>기사(조선, 일반기계, 항로표지)<br>1·2·3·4급 항해사<br>1·2·3·4급 기관사   | 산업기사(조선, 컴퓨터응용가공, 항로표지)<br>5·6급 항해사<br>5·6급 기관사                    |
| 농 립 운 영                          |     | 기술사(종자, 산림, 축산, 농화학, 조정, 식품)<br>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조정,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 산업기사(종자, 산림,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조정, 식품)                               |
| 보 건 운 영                          |     |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br>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br>위생사, 작업치료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영양사, 임상심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br>임상심리사 2급,<br>응급구조사 2급 |

2. 연구사

| 계급<br>직렬            | 연 구 사   |
|---------------------|---|
| 공업연구                |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화공, 세라믹,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조선, 항공기관, 항공기체, 섬유, 의류,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및지반, 제품디자인,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화약류제조, 화공,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조선, 항공, 섬유, 의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응용지질,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광학, 승강기, 식품) |
| 농업연구                |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메카트로닉스,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위생사, 영양사, 평생교육사 1·2급   |
| 농업연구<br>(축 산)       |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수의사   |
| 농업연구<br>(농 공)       |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도시계획,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품질관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도시계획,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
| 농업연구<br>(농식품<br>개발) | 기술사(식품, 농화학, 축산) 기사(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축산) 영양사, 위생사   |
| 녹지연구                |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
| 해 양<br>수산연구         |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
| 보건연구                | 기술사(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방사선관리) 기사(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의사, 치과 의사, 한 의사, 수 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간호사, 조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

| 계급<br>직렬      | 연구사  |
|---------------|--|
| 환경연구          | 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화공, 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 및 지반, 방사선관리, 기상예보)<br>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화공,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br>의사, 수의사, 약사, 위생사 |
| 시설연구<br>(토 목) | 기술사(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및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및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및지반, 교통)<br>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
| 시설연구<br>(건축)  |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br>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br>건축사   |

3. 지도사

| 계급<br>직렬 | 지도사  |
|----------|--|
| 농촌지도     |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산림, 축산, 농화학, 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기계안전, 건설안전, 식품, 지질및지반, 폐기물처리,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br>기사(종자, 시설원예,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산업안전, 건설안전, 식품,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br>수의사, 청소년지도사, 위생사, 영양사, 평생교육사 1·2급,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
| 어촌지도     |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br>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

비고

- 영 제55조에 따라 경력경쟁 임용 시에 위의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증을 소지하여 필기 시험을 면제받은 경우와 지방공무원인사규칙의 관계 규정에 따라 신규임용 시에 위의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증을 소지하여 응시자격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점평정을 하지 않는다.
- 명칭변경, 통합,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자격증으로 인정한다.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2급 자격증은 상수도사업소 근무자에 한하여 가산점을 평정한다.

4. 가산점의 부여 기준 및 그 가산점

| 가산점의 부여 기준                       | 가산점  |
|----------------------------------|------|
| 해당 직렬의 해당 계급 또는 상위 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 0.50 |
| 해당 직렬의 바로 아래 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 0.25 |

[별표 21]

###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기준

(제27조 관련)

| 구 분  | 부여점수     | 부여기준   | 비 고 |
|------|----------|--|-----|
| 교류직위 | 최고 2.4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br>최초 교류 임용된 날부터 1개월마다 0.1점 가산점 부여  |     |
| 특정업무 | 최고 0.75점 | <p>특정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계급의 변동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br/>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1개월마다 0.05점 가산점 부여</p> <p>&lt;특정업무&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래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 중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7급 이하(무보직 6급 포함) 공무원 (방재안전 직렬 제외)</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li> <li>2. 「자연재해대책법」</li> <li>3. 「소하천정비법」</li> <li>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li> <li>5. 「재해구호법」</li> <li>6. 「유선 및 도선 사업법」</li> <li>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li> <li>8.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li> <li>9.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li> <li>10. 「지진·화산재해 대책법」</li> <li>11. 「풍수해보험법」</li> <li>1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li> <li>13.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li> <li>1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li> <li>15. 「가축전염병예방법」</li> <li>1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법률」</li> </ol> |     |
| 전문직위 | 최고 2.4점  | <p>전문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가산점 부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년 초과 4년 이하: 월 0.1점</li> <li>- 4년 초과 5년 이하: 월 0.12점</li> <li>- 5년 초과: 월 0.15점</li> </ul>  |     |

[별표 22]

### 실적가산점 부여기준

(제27조 관련)

| 대상분야  | 부여항목                     | 부여기준   | 부여가점  | 선정 기준 및 절차   |
|---|--------------------------|--|---|--|
| 1. 업무 추진 우수<br><br>※ 중복신청시 유리한 것 택1   | 1-1. 기관 및 개인 포상          | <input type="checkbox"/>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자체 기관·개인 포상<br><br><input type="checkbox"/> 대통령<br><input type="checkbox"/> 국무총리<br><input type="checkbox"/> 장관(청장) 및 도지사·도회의의장<br>· 1등 상당<br>· 2등 상당<br>· 3등 상당<br><br>※ 상명이 기관마다 상이함에 따라, 대상-최우수-우수인 경우 대상을 1등, 최우수-우수-장려인 경우 최우수를 1등으로 봄           | 1.0 이내<br><br>1.0<br>0.8<br><br>0.5<br>0.3<br>0.2 | <input type="checkbox"/> 기준<br>- 포상 받은 시점 기준 평정기간 중 중앙 및 광역 단위 행정기관 포상 (공사, 공단 및 협회 등 제외)<br><input type="checkbox"/> 방법<br>- 평가에 따른 포상만 해당<br>※ 개인 포상에 따른 일반 포상 제외<br><input type="checkbox"/> 대상 : 평가기간 중에 근무한 공무원<br>※ 평가시점과 포상시점이 다른 경우, 평가시점 근무 공무원<br>- 기관포상 : 부서장·팀장·실무자<br>- 개인포상 : 해당 공무원<br><input type="checkbox"/> 신청 시 증빙자료<br>- 관련공문, 표창장 등 관련 자료 일체 |
| 2. 자원봉사   | 2-1. 자원봉사 우수             | <input type="checkbox"/> 자원봉사활동 우수자<br><br><input type="checkbox"/> 100시간 이상<br><input type="checkbox"/> 80시간 이상 100시간 미만<br><input type="checkbox"/> 60시간 이상 80시간 미만<br><input type="checkbox"/> 40시간 이상 60시간 미만<br><input type="checkbox"/>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 0.5 이내<br><br>0.5<br>0.4<br>0.3<br>0.2<br>0.1     |  |
| 3. 출산장려   | 3-1. 출산(입양) 및 다자녀 공무원 우대 | <input type="checkbox"/> 둘째아 이상 출산(입양) 및 다자녀 공무원<br><br><input type="checkbox"/> 여성공무원의 경우<br>· 둘째 자녀 출산 시<br>· 셋째이상 자녀 출산 시 0.5점씩 가산<br>ex) 셋째아 출산 1.0<br>넷째아 출산 1.5<br><br><input type="checkbox"/> 남성공무원의 경우<br>· 셋째 자녀 출산 시<br>· 넷째이상 자녀 출산 시 0.5점씩 가산<br>ex) 셋째아 출산 0.5<br>넷째아 출산 1.0 | 0.5<br><br>0.5                                    | <input type="checkbox"/> 기준<br>- 2017.01.01. 이후 출산(입양) 공무원<br>- 부부공무원의 경우 각각 적용<br>- 휴직할 경우 복귀후 첫 근평에, 휴직안할 경우 출생등록일에 해당하는 근평기간에 각각 적용<br>※ 적용기간 경과후 신청 불인정  |
| ※ 유의사항<br>· 동일한 대상 분야에 2개 이상의 가점 부여기준에 해당될 경우 유리한 것 1개만 적용<br>· 여러 부서 및 담당자가 참여하여 거둔 성과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가점 및 대상자를 조정 또는 균등 분배할 수 있음 (몰아주기 불가)<br>· 해당 평정기간 중의 실적에 한함(단, 연말에 연간실적으로 평가되는 결과에 대하여는 최종 평가 결과를 실적으로 인정해주되, 직전 평정 시 가점에 이미 반영된 경우는 제외) |                          |  |   |  |

[별표 23]

### 겸임 예정직급 기준표

(제29조 관련)

| 임용예정 계급               |   | 2 급 ·<br>연구관·<br>지도관 | 3 급 ·<br>연구관·<br>지도관 | 4 급 ·<br>연구관·<br>지도관   | 5 급 ·<br>연구관·<br>지도관   | 6 급 ·<br>연구사·<br>지도사   | 7 급 ·<br>연구사·<br>지도사   | 8 급   | 9 급 |
|-----------------------|---|----------------------|----------------------|------------------------|------------------------|------------------------|------------------------|-------|-----|
| 교육공무원                 | 대학, 교육대학,<br>전문대학(사립학<br>교 및 동부설연구<br>소의 교원 포함) | 교 수                  | 교 수<br>부 교수          | 부 교수<br>조 교수           | 조 교수<br>전임강사<br>(2년이상) | 전임강사                   |                        |       |     |
|                       | 고등학교  |                      |                      | 24 호 봉<br>이 상 의<br>교 원 | 16 호 봉<br>이 상 의<br>교 원 | 12 호 봉<br>이 상 의<br>교 원 | 11 호 봉<br>이 하 의<br>교 원 |       |     |
| 정부투자기관 및<br>정부산하기관·단체 |   | 이 사<br>(3년이상)        | 이 사                  | 부 장                    | 과 장<br>(차 장)           | 계 장<br>(대리)            | 평 사 원<br>(3년이상)        | 평 사 원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천연색 사진(3.5cm×4.5cm, 여권용)으로 2매 모  
두 동일원판을 붙임
7.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또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 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또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별지 제2호서식]

입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

|           |                            |         |                     |          |           |      |
|-----------|----------------------------|---------|---------------------|----------|-----------|------|
| ※등록번호     |                            | 제 회 번   | ③ 응 시 연 도<br>및 회 수  |          | ( )년도 제 회 |      |
| ※ 급       |                            | 직       | 응시지구(기호)<br>응 시 번 호 |          | 지구        | 번    |
|           |                            |         | 직 급 별               |          | 급 직       |      |
| ① 성 명     | (한글)                       |         | ② 희망지역              |          | ※ 등록심사    |      |
|           | (한문)                       |         | 제1지역                | 시군       | 사진대조      | 서류심사 |
|           | (영문)                       |         | 제2지역                | 시군       | ㉠         | ㉠    |
| ④ 주 소     |                            |         |                     |          | (사진부착)    |      |
| ⑤ 연 락 처   | 전화번호 :                     |         |                     |          |           |      |
|           | 휴 대 폰 :                    |         |                     |          |           |      |
| ⑥ 병 역     | ○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         |                     |          |           |      |
| ⑦ 학 력     |                            |         |                     |          |           |      |
| 부터        | 까지                         | 학 력     |                     | 전공·부문·과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⑧ 자 격 면 허 |                            |         |                     | ⑨ 상 별    |           |      |
| 연 월 일     | 종 별                        |         | 연 월 일               | 사 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⑩ 경 력     |                            |         |                     |          |           |      |
| 부터        | 까지                         | 경 력 사 항 |                     |          | 발령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b>(※ 응시원서 부분 첨부란)</b></p>   |     |     |     |
| <p>⑪ 비상연락처</p>  |     |     |     |
| 관계  | 성 명 | 연락처 |     |
|   |     |     |     |
|   |     |     |     |
| <p>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p> |     |     |     |
| <p>년    월    일</p>  |     |     |     |
| 출원자   |     |     | (인) |
| <p>오산시의회의장 귀하</p>   |     |     |     |

###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각급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로서 공무원에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및 공개경쟁시험합격자는 다음 요령에 따라 등록한다.

1. 등록기간

년 월 일부터  
일간  
년 월 일까지

2. 등록장소

시·도, 시·군·구 ○○과 또는 시·도의회, 시·군·구의회 ○○과

3. 구비서류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

- (1) 임용후보자등록원서(소정용지) 사진부착란에 필히 사진(2매)을 부착할 것
- (2) 주민등록부 초본(전체 이력기재) 또는 병적증명서(제1국민역과 실역미필보충역 해당자 및 미수검자, 시·도 병무청 및 시·구·읍·면·동장 발행) 1통
-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인사담당자의 원본대조·확인이 된 것) 1통
- (4) 경력증명서(경력이 있을시) 1통
- (5) 면허증 또는 자격증 소지자는 그 사본 1통
- (6) 취업보호대상자는(전몰군경의 유족인 경우 대리취업 확인서) 국가보훈처발행 관계증명서 1통
- (7) 민간인신원진술서(소정용지에 사진4매를 완전 부착할 것) 4통
- ※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된 후보자만 제출
- (8) 공무원전력조사서 1통(공무원으로 재직했던 경우에 한함)
- (9)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른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이상 구비서류를 등록원서 2통과 같이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등록원서와 민간인 신원진술서에 사진을 각각 부착한다.

(사진은 응시원서 부착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5매가 소요됨)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할 경우 서류 제출 받지 않음(본인이 정보에 대한 공동이용을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별도 서류 제출을 통해 확인)

나.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

임용후보자등록서 2통에 현 근무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인사기록카드 1통만을 첨부한다.

4. 등록원서 제출방법

- 가. 등록원서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등기우편으로 우송한다.
- 나. 등록필증 송부용 봉투(주소 성명을 명기하고 반신용 우표 첨부)를 필히 동봉한다.

5. 원서기재요령

가. 등록원서는 한글로 작성(워드 또는 펜으로 기재)하되, 한글만으로는 애매한 것은 ( )안에 한자를 쓴다.

나. 숫자는 상용 숫자를 사용하되 년월일에 있어서는 1972년 1월 31일을 1972. 1. 31.과 같이 약기한다.

다. 각란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기재할 것이며 ※란은 기재하지 않는다.

- ① 성 명 ... 한글과 한자를 모두 기재한다.
- ② 회 망 지 역 ... 희망지역은 제1희망, 제2희망으로 구분하여 각각 하나만을 기재한다.

##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③ 시험합격구분 ... (예) 72년, 제1회 7지구 128번 5급, 행정직 등 기재
- ④ 주 소 ... 우편물이 송달될 수 있도록 정확한 주소를 기재
- ⑤ 연 락 처 ... 본인에게 직접 연락이 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재
- ⑥ 병 역 관 계 ... 남성인 경우 '병역필', '면제', '미필' 중 체크(√), 여성인 경우 '여성' 체크(√)
  - \* 남성인 경우 군 복무 중인 경우 '미필'에 체크(√)
  - \* 여성인 경우 군 복무 중 또는 군 복무를 마쳤더라도 '여성'에 체크(√)
- ⑦ 학 력 ... 중학교 이상 학력만 기재하며 ○년 졸업, ○년 수료, ○년 중퇴 등 수업년수를 기재
- ⑧ 자 격, 면 허 ... 각종 시험합격, 자격, 면허 등을 종류별로 기재
- ⑨ 상 별 ... 수상사항, 공무원 징계처분, 형사상의 처벌 등을 기재
- ⑩ 경 력 ... 공무원경력과 사회일반경력을 기재
- ⑪ 비 상 연 락 처 ...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연락처를 기재



[별지 제3호서식]

## 임 용 후 보 자 명 부

| ①<br>등록<br>번호 | ②<br>등록<br>연월일 | ③<br>성명 | ④<br>생년<br>월일 | ⑤<br>성별 | ⑥<br>현<br>주소 | ⑦<br>최출<br>신교<br>명 | ⑧<br>특기 | ⑨<br>병역<br>필필 | ⑩<br>희망<br>기관 | ⑪신원조사 |    |    | ⑫추 천    |         |         |         |         | ⑬임 용    |    |          | 비고 |  |  |
|---------------|----------------|---------|---------------|---------|--------------|--------------------|---------|---------------|---------------|-------|----|----|---------|---------|---------|---------|---------|---------|----|----------|----|--|--|
|               |                |         |               |         |              |                    |         |               |               | 의뢰    | 회보 | 송부 | 제1<br>회 | 제2<br>회 | 제3<br>회 | 제4<br>회 | 제5<br>회 | 연월<br>일 | 직명 | 근무<br>관서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⑩ 신원조사 항목은 「보안업무규정」 제36조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신원조사 대상자만 해당함

[별지 제4호서식]

## 오 산 시 의 회

분류기호 (전화번호) . . .

수 신

참 조

제 목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

(문서분류기호)로 추천하신 공무원임용후보자의 임용결과를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계 급 | 직 렬 | 추천인원수 | 임용자수<br>(임용예정자수)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붙 임 1. 임용자 명단 1부  
 2. 임용불응자 명단 부  
 3. 미임용자 관계서류 부. 끝.

오 산 시 의 회 의 장

직 인

**1. 임용자 명단**

| 등록번호 | 성명 | 임 용 연 월 일 | 임 용 직 급 | 임 용 직 위 | 비 고 |
|------|----|-----------|---------|---------|-----|
|      |    |           |         |         |     |
|      |    |           |         |         |     |

**2. 임용불응자 명단**

| 등록번호 | 성 명 | 임 용 불 응 사 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 고 : 본인이 임용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본인의 진술서를 첨부한다.

[별지 제5호서식]

## 년도 급 공개경쟁임용 면접시험 평정표

|  |                                 |       |      |
|--|---------------------------------|-------|------|
| 필<br>기<br>적<br><br>감<br>재<br>정<br><br>용<br>란 | (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 직렬(류) |      |
|  | 본인필적 :                          | 응시번호  |      |
|  | 생년월일<br>(주민등록번호 앞자리)            | 성명    | (한글) |
|  |                                 |       | (한자) |

| 평 정 요 소            | 위 원 평 정     |   |   |
|--------------------|-------------|---|---|
|                    | 상           | 중 | 하 |
|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   |   |
|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   |   |
|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   |   |
|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             |   |   |
|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   |   |
| 계                  | 개           | 개 | 개 |
| 위 원 서 명            | 성 명 ( 서 명 ) |   |   |

|                       |  |         |  |
|-----------------------|--|---------|--|
|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     |  | 우 수     |  |
|                       |  | 보 통     |  |
|                       |  | 미 흡     |  |
|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  | 담 당 확 인 |  |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1) 우수 : 위원 5명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 (2) 미흡 : 위원 5명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 5명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3) 보통 : "우수"와 "미흡" 외의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별지 제6호서식]

## 년도 제 회 경력경쟁임용시험등 면접시험 평정표

|                                      |                                 |  |  |  |  |       |      |
|--------------------------------------|---------------------------------|--|--|--|--|-------|------|
| 필<br>기<br>적<br>감<br>재<br>정<br>용<br>란 | (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  |  |  |  | 직렬(류) |      |
|                                      | 본인필적 :                          |  |  |  |  | 응시번호  |      |
|                                      | 생년월일<br>(주민등록번호 앞자리)            |  |  |  |  | 성명    | (한글) |
|                                      |                                 |  |  |  |  | (한자)  |      |

| 평 정 요 소            | 위 원 평 정     |   |   |
|--------------------|-------------|---|---|
|                    | 상           | 중 | 하 |
|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   |   |
|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   |   |
|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   |   |
|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             |   |   |
|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   |   |
| 계                  | 개           | 개 | 개 |
| 위 원 서 명            | 성 명 ( 서 명 ) |   |   |

|                       |     |         |  |
|-----------------------|-----|---------|--|
|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     |     | 합 격     |  |
|                       | 판 정 | 불합격     |  |
|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     | 담 당 확 인 |  |

###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불합격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별지 제7호서식]

# 시 험 요 구 서

|  |         |                   |                              |                                 |                       |  |                       |    |
|--|---------|-------------------|------------------------------|---------------------------------|-----------------------|--|-----------------------|----|
| 접수번호   | 기 관     | 개 인               |                              |                                 |                       |  |                       |    |
| ①  | 소속      |                   | ②<br>시험<br>구분                |                                 | ③<br>임용예정<br>직<br>급   | 직명   |                       |    |
|  | 요구      |                   |                              |                                 |                       | 직류   |                       | 계급 |
| ④  | 한글      |                   | ⑤<br>연령                      | 만 세                             | ⑥<br>현 직 급            | 직명   |                       |    |
|  | 한자      |                   |                              |                                 |                       | 직류   |                       | 계급 |
| ⑦<br>선택 과 목  | 가.      | ⑧<br>필기시험<br>면제사유 |                              |                                 | ⑨<br>제 1 차 시험<br>면제사유 | 년 월 일 시행<br>제 회 1차 합격<br>응시번호                    |                       |    |
|  | 나.      |                   |                              |                                 |                       |  |                       |    |
| ⑩<br>자격·면허<br>훈련 등   |         |                   | ⑪<br>취업보호대상<br>여부<br>(해당란에○) | 군제대자<br>(복무기간)<br>유공자 및<br>그 가족 | ※<br>대장<br>원본<br>확인   | 대장번호   |                       |    |
|  |         |                   |                              |                                 |                       | 확 인 자 명<br>성 명                                   |                       |    |
| 위와 같이 요구함.   |         |                   |                              |                                 |                       | 계<br>인   | (사진)<br>(3.5cm×4.5cm) |    |
| 년 월 일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인)</span><br>시 험 요 구 기 관 의 장   |         |                   |                              |                                 |                       |  |                       |    |
| ※<br>시 험<br>시행사항   | 시 행 차 수 | 1                 | 2                            | 3                               |                       |  |                       |    |
|  | 시행연월일   | . . .             | . . .                        | . . .                           |                       |  |                       |    |
|  | 회 수     | 제 회               | 제 회                          | 제 회                             |                       |  |                       |    |
|  | 응 시 번 호 |                   |                              |                                 |                       |  |                       |    |
|  | 결 과     |                   |                              |                                 |                       |  |                       |    |
| 응시<br>번호   |         |                   | 응 시 표                        |                                 | 계<br>인                | (사진)<br><br>위 요구서에 첨부하<br>는 것과 동일한 원판,<br>동일한 규격 |                       |    |
| 년 시행 제 회 시험<br>임용예정직명 : (급 류)<br>성 명 :<br>시험요구기관명 :<br>년 월 일<br>시험 실시 기관 의 장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인)</span> |         |                   |                              |                                 |                       |  |                       |    |

작 성 요 령

1. ※란과 응시표상의 각란은 시험실시기관에서 기재한다.
2. ①~⑩란은 시험요구기관의 인사사무담당자가 기재하되 다음 요령에 따른다.
  - ①란의 “소속”란은 응시자가 시험요구기관의 산하기관 소속공무원일 때 그 산하기관명까지 기재한다.
  - ②란은 “전직”, “경력경쟁임용”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③, ⑥라의 “직류”란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규정된 직렬표에 의거 해당직류에 한하여 명확히 기재한다.
  - ④란은 정자(正子)로 기재한다.
  - ⑦란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 또는 [별표2]를 참조하여 1과목 또는 2과목(서기관이상 전직, 경력경쟁 임용의 경우에는 (가)란에 1차 (나)란에 2차시험과목)을 기재하되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거 과목을 따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과목명도 모두 명기하고 그 사유를 부기한다.
  - ⑧란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관계규정에 따른 필기시험면제(서류전형 및 면접시험)대상자에 한하여 그 근거법규와 사유를 명기한다(이 경우에는 반드시 그 증명서류 즉 자격증사본 또는 연구실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⑨란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1차시험면제대상자에 한하여 본인의 제1차시험 합격당시의 시행연월일, 시행회수 및 응시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⑩란과 ⑪란은 6급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에 한하여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3]중 가점이 높은 어느 하나를 기재하되 반드시 이를 증명할만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사진은 최근에 촬영한 것을 첨부하고 인사사무담당자의 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           |
|-----------|
| (수입증지첨부란) |
|-----------|

(절 취 선)

응 시 자 주 의 사 항

1. 삭제
2. 시험장에는 응시표 및 신분증과 답안작성에 필요한 필기도구를 지참하여야 한다.
3. 시험 당일은 매 시험 시작 30~4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책상 위 오른쪽에 응시표 및 신분증을 놓아 감시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